



2023. 9.

국회예산정책처 | 국정감사 대비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2023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한지은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지훈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 보건복지위원회 】

【 환경노동위원회 】

【 국토교통위원회 】

2023.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1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정부 부문 총지출의 116%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이나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공급, 주거 정책 및 정책금융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Contents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
2. 국민연금공단 적립금 운용 현황	6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운용 현황	9
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필요	14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18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징계 관련 문제점	21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징계 관련 문제점	23
8. 한국공공조직은행 징계 관련 문제점	25

환경노동위원회

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30
2.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지아 낸스크라 출자회사 2,268억원 손상차손 발생	33
3. 한국수자원공사의 필리핀 양갓 출자회사 627억원 손실 발생	36
4. 한국수자원공사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최다 발생	38
5.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41
6. 한국환경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52
7. 국립공원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54
8. 국립공원공단 주택융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56
9. 국립생태원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65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징계 및 성과급 등 관련 문제점	69
11.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위치 선정에 있어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	74
12. 근로복지공단 국외출장 시 여행대행사를 통한 가이드 및 투어비 등의 출장경비 집행 문제	80
13. 근로복지공단 국외출장 시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 방문 문제	84
14. 근로복지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86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융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88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과급 관련 문제점	93
17. 한국고용정보원 징계 관련 문제점	95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97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02
2.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105
3.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113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콜센터업무 용역 자회사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16
5.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금액 급증 및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불안정 ..	120
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124
7.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126
8.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토지) 매각대금 국고 반납 및 국가재무제표에 매각이익 귀속 ..	137
9. 국가철도공단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 발생	141
10. 국가철도공단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44
1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 국가 출자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방식의 문제점	148
12. 한국도로공사 미활용 및 무상임대 유희부지 적극적 관리 필요	152
13. 도로요금 상승요인이 되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과다 내부 유보 지양 필요	155
1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 수납시스템 설치계획,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158
15. 한국도로공사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 자체 발전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필요	162
16. 한국도로공사 재난대응 훈련 행사대행 용역 수의계약 부적절	164
17. 한국도로공사 면허수당 관리감독 및 지급 방식 문제	166
18. 한국도로공사 징계 및 휴가휴직 관련 문제점	169

1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경비 용역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72
20. 인천국제공항공사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75
21. 한국공항공사의 출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주) 지속적 손실 발생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179
22.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경비 용역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82
23. 한국공항공사 주택융자금 및 징계 관련 문제점	185
24.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등으로 적자 전환	189
2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 관리 필요	192
26.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리츠 초과수익 공유조건 부적절	195
2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급증 및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01
2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개선 필요	205
29.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부보증 범위 구체화 필요 및 내규를 통한 조정 지양 필요	208
3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일괄 설정 재검토 필요	211
3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보증료 인하 검토 필요	213
32.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17
33. 한국철도공사 징계 관련 문제점	226
34. (주)에스알 징계 및 성과급 등 관련 문제점	229
35. 한국부동산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234
36. 한국부동산원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37
3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244
38. 한국국토정보공사 징계 관련 문제점	248
39. 국토안전관리원 성과급 관련 문제점	250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보건복지위원회



가. 일반현황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4개 기관임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24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28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 등 4개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보건 복지부 (2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4)	기타 공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1년 대비 하향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5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개 기관
 -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4년간 양호이상(A~B) 등급을 받아오다 2022년 미흡(D) 등급으로 하락, 한국식품안전관리원도 우수(A) 등급에서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하락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미흡(D) 등급을 받아오다 2022년 아주미흡(E) 등급으로 평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 복지부 (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경영결과	B	B	C	B	B
			경영성과급	3,489	3,006	4,283	4,737	4,76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결과	B	A	A	C	B
			경영성과급	1,742	1,383	1,631	1,677	813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결과	A	A	A	A	B
			경영성과급	1,560	1,824	1,559	1,457	1,73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영결과	A	B	B	A	D
			경영성과급	1,391	1,435	1,108	1,070	1,34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영결과	-	D	D	C	E
			경영성과급	-	0	0	0	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영결과	B	B	B	B	C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경영결과	B	C	B	B	C
			경영성과급	622	1,258	919	1,380	1,16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결과	B	B	C	B	A
			경영성과급	963	1,437	1,403	812	1,243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결과	-	D	E	C	C
			경영성과급	-	-	153	168	666
식품의약품 안전처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경영결과	B	A	A	A	C
			경영성과급	-	1,440	1,746	1,779	1,852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8개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임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임
 - 2022년 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2020년과 동일한 등급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 복지부 (1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2	2	2	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3	3	3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3	4	4	4
		국민건강보험공단	1	1	1	1	1
		국립중앙의료원	4	3	4	3	2
	기타 공공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	-	3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4	3	4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2	3	-	3
		대한적십자사	3	5	4	2	2
		국립암센터	4	3	3	3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3	4	3	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	4	3	-	-
		한국장애인개발원	4	3	3	-	-
식품의약품 안전처 (1)	기타 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3	3	-	3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민연금공단 적립금 운용 현황

가. 현황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
 - 「국민연금법」 제45조는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 2022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총액은 890조 4,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적립금은 2013년 426조 9,545억원에서 2021년 948조 7,194억원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은 전년 대비 58조 2,537억원 감소함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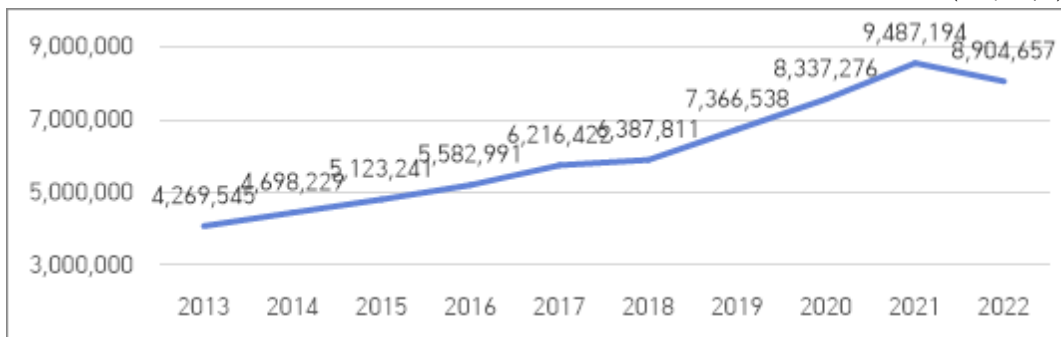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13(a)	2014	2015	2016	2017	2018
4,269,545	4,698,229	5,123,241	5,582,991	6,216,422	6,387,811
2019	2020	2021(b)	2022(c)	증감	
7,366,538	8,337,276	9,487,194	8,904,657	전년대비(c-b)	'13년대비(c-a)
				△582,537	4,635,112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나. 주요 쟁점

- 2022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Delta 8.22\%$ 로, 손실 기록
 - 2022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Delta 8.22\%$ 로, 최근 10년 중 수익률이 가장 낮았음
 - 최근 10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 운용 수익률이 (-)였던 2018년은 운용 수익률이 $\Delta 0.92\%$ 로, 2022년의 $\Delta 8.22\%$ 수익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익률임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5.25	4.57	4.75	7.26	$\Delta 0.92$	11.31	9.70	10.77	$\Delta 8.22$	9.09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의 낮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특히 낮은 것에 기인
 -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2022년 적립금 중 약 42%는 채권, 약 41%는 주식, 약 16%는 대체투자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최근 10년간 채권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증가
 - 채권의 경우 2014년 60%에서 2022년 42%로 그 비중이 감소 추세
 - 주식의 경우 적립금 구성 비중이 2014년 약 30%에서 2022년 약 41%로 증가 추세이며, 대체투자 역시 2014년 10%에서 2022년 16%로 증가 추세. 특히 해외주식의 비중이 2014년 12.05%에서 2022년 27.05%로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기	0.72	0.39	0.62	0.28	0.34	0.24	0.25	0.26	0.23	0.23
중장기	채권	59.31	56.65	54.19	50.30	52.85	47.68	44.50	42.57	42.05
	주식	29.91	32.17	33.68	38.58	34.73	40.56	44.31	44.53	41.13
	국내	17.86	18.52	18.33	21.16	17.05	17.95	21.19	17.48	14.08
	해외	12.05	13.65	15.34	17.42	17.68	22.61	23.12	27.05	27.05
	대체투자	9.93	10.67	11.40	10.75	11.99	11.44	10.87	12.58	16.42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은 자산 유형별로 대체투자를 제외한 모든 자산유형에서 (-)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단기 자산($\Delta 0.86\%$), 채권($\Delta 5.45\%$)에 비해 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Delta 16.32\%$ 로 크게 낮았음
- 주식의 경우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이 $\Delta 16.32\sim 21.91\%$ 로, 자산 특성상 수익률의 폭이 채권($\Delta 5.45\sim 6.95\%$)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전체	5.25	4.57	4.75	7.26	$\Delta 0.92$	11.31	9.70	10.77	$\Delta 8.22$	9.09
단기	1.48	1.62	2.02	0.35	2.43	1.46	$\Delta 0.06$	1.10	$\Delta 0.86$	2.76
중장기	채권	6.95	4.16	1.98	0.48	4.80	4.30	1.39	$\Delta 0.16$	$\Delta 5.45$
	주식	$\Delta 0.06$	2.98	7.79	18.70	$\Delta 11.88$	21.91	21.36	19.22	$\Delta 16.32$
	국내	$\Delta 5.50$	1.34	5.59	25.88	$\Delta 16.77$	12.58	34.89	6.73	$\Delta 22.76$
	해외	9.45	5.37	10.63	10.62	$\Delta 6.19$	30.63	10.76	29.48	$\Delta 12.34$
	대체투자	12.27	12.19	9.91	4.53	11.80	9.62	2.38	23.80	8.94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중 주식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2022년 주식 투자의 운용 수익률은 크게 낮아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가.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적립금 총액은 26조 6,763억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 중
- 2022년 건강보험의 결산상 잉여금은 4조 8,717억원으로, 적립금 누적액은 23조 8,701억원
- 2022년 장기요양보험의 결산상 잉여금은 1조 7,059억원으로, 적립금 누적액은 2조 8,062억원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은 2020년 이후로 증가 추세

- 2022년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291억원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조 8,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499억원 증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건강 보험	결산상 잉여금	△32,922	△29,162	15,037	27,718	48,717	20,999
	적립금 누적액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36,291
장기 요양	결산상 잉여금	△6,661	△6,911	1,470	10,313	17,059	6,746
	적립금 누적액	10,997	4,136	4,475	13,563	28,062	14,499
적립금 누적 총액		216,952	181,848	178,656	215,973	266,763	50,790

주: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적립금 구성 비중 및 운용 수익률 관련 쟁점

- 건강보험의 2022년 적립금 운용 평잔은 약 19조 6,000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의 2022년 적립금 운용 평잔은 약 2조 9,000억원임
 -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단기(현금성) 자산의 운용 평잔은 약 4조 1,000억원이고 단기(유동성) 자산의 운용 평잔은 약 2조 2,000억원이며, 중장기(채권) 자산의 운용 평잔은 약 13조 3,000억원임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2년 기준 단기(현금성) 자산과 단기(유동성) 자산의 운용 평잔은 각각 약 9,000억원이고, 중장기(채권) 자산의 운용 평잔은 약 1조 1,000억원임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평잔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7.6	11.8	15.8	19.3	21.0	21.5	20.4	16.8	18.2	19.6
단기	현금성	2.1	2.1	2.5	3.1	2.7	3.3	3.4	4.3	4.1	4.1
	유동성	1.9	3.3	1.5	2.5	2.3	3.4	2.9	2.4	2.7	2.2
중장기(채권)		3.6	6.4	11.8	13.8	16.0	14.8	14.0	10.1	11.4	1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운용 평잔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8	2.2	2.4	2.5	2.3	1.9	1.3	1.0	1.7	2.9
단기	현금성	0.2	0.1	0.3	0.3	0.4	0.4	0.5	0.5	0.7	0.9
	유동성	0.7	0.8	0.4	0.5	0.3	1.3	0.7	0.5	0.8	0.9
중장기(채권)		0.9	1.3	1.7	1.7	1.6	0.2	0.1	-	0.2	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은 주로 단기 자산 및 채권으로 구성

- 건강보험은 2022년 기준 적립금의 약 66%가 채권으로, 약 32%가 단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투자 비중은 2.5%
 - 건강보험은 2020년부터 대체투자를 시작하였으나, 그 비중이 매우 작음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2년 기준 적립금의 약 61%가 단기 자산으로, 약 39%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주식이나 대체투자는 하고 있지 않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건강보험 적립금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기	52.7	45.9	25.5	28.8	24.0	31.1	31.1	40.0	37.3	31.8
중장기	채권	47.3	54.1	74.5	71.2	76.0	68.9	68.9	59.9	61.3
	주식	-	-	-	-	-	-	-	-	-
	대체투자	-	-	-	-	-	-	0.1	1.4	2.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기	47.3	41.9	27.3	31.9	31.2	90.8	89.3	100	88.4	60.9
중장기	채권	52.7	58.1	72.7	68.1	68.8	9.2	10.7	0	11.6
	주식	-	-	-	-	-	-	-	-	-
	대체투자	-	-	-	-	-	-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건강보험은 2.15%, 장기요양보험은 2.54%임
 - 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10년간 1~2%대의 운용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적립금의 대부분을 비교적 단기자산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장기요양보험 역시 적립금이 단기자산과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최근 10년간 1~3%대의 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2.89	2.73	2.19	1.70	1.66	2.20	2.28	1.91	1.22	2.15
단기	현금성	2.68	2.57	1.77	1.52	1.43	1.76	1.83	1.25	0.98	2.69
	유동성	3.24	2.77	2.07	1.81	1.86	2.10	2.09	1.77	1.47	2.75
중장기	채권	2.83	2.76	2.30	1.71	1.67	2.33	2.43	2.25	1.21	1.89
	대체투자	-	-	-	-	-	-	-	△0.99	8.80	6.60

주: 2020년의 대체투자는 11월부터 신규로 집행함에 따라 초기비용 발생으로 음(-)의 수익률 발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08	2.81	2.17	1.78	1.68	1.96	1.99	1.41	1.18	2.54
단기	현금성	2.82	2.44	1.88	1.53	1.46	1.81	1.88	1.37	1.06	2.80
	유동성	3.30	2.85	1.94	1.87	1.74	2.01	2.00	1.50	1.25	2.64
중장기(채권)		2.98	2.82	2.26	1.81	1.72	1.99	2.43	-	1.49	2.3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최대적립금 관련 쟁점

-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최대적립금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 최대적립금의 기준이 되는 ‘그 연도에 든 비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 존재
 - ‘그 연도에 든 비용’이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인지 ‘보험급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건강보험재정 전체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 존재
 -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적립금의 규모가 1조 5,244억원 차이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해석에 따른 최대적립금 차이

(단위: 억원)

구분	‘그 연도에 드는 비용’(A)	최대적립금(A×50/100)
보험급여비용으로 해석(a)	834,667	417,333
건강보험재정지출 총액으로 해석(b)	865,155	432,577
차이(b-a)	30,488	15,2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건강보험 적립금의 보유목적이 장래의 예상치 못한 보험급여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최대적립금 규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참고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대적립금 규모의 의미를 ‘건강보험재정지출 총액(b)’으로 해석 중

가. 현황

-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병원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 「의료법」 제4조는 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2항은 의사, 의료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관리’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 병원에 대해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환수결정 및 지급보류를 시행하는 사업임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 1,785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108건이었으며, 요양병원(66건), 치과병원(48건) 순으로 많았음
 - 최근 5년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1,692억원), 병원(747억원) 순으로 많았음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적발기관			환수결정금액		
	적발(A)	개설기관 전체(B)	비중(A/B)	환수결정(C)	요양급여비용 총액(D)	비중(C/D)
의원	108	154,168	0.07	169,209	19,341,354	0.87
병원	17	5,889	0.29	74,704	22,402,649	0.33
요양병원	66	6,061	1.09	876,057	14,800,207	5.92
치과병원	48	85,704	0.06	13,574	7,490,680	0.18
한의원	41	65,022	0.06	13,985	807,555	1.73
한방병원	17	1,592	1.07	30,937	1,231,455	2.51
합계	297	318,436	0.09	1,178,467	66,073,900	1.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된 금액은 6.66%로 납부율 저조
 -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 4,300만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함. 최근 5년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환수결정된 금액은 총 1조 1,784억 6,700만원이나 납부된 금액은 785억 1,400만원에 불과하여 납부율이 6.66%로 저조한 상황이며, 미납부된 금액이 1조 이상 이므로 납부 관리 강화 필요
 - 또한,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납부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납부		미납부	
	기관수	금액(A)	금액(B)	납부율(B/A)	금액(C)	미납부율(C/A)
2018	106	222,989	23,876	10.71	199,113	89.29
2019	100	518,616	18,924	3.65	499,692	96.35
2020	46	277,440	12,483	4.5	264,957	95.5
2021	23	55,654	11,988	21.54	43,666	78.46
2022	22	103,768	11,243	10.84	92,525	89.16
합계	297	1,178,467	78,514	6.66	1,099,953	93.3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편이므로 관리 필요
 - 2022년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며, 이 중 각하(4건)와 소취하(2건)된 경우를 제외한 1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4건이었으며, 패소한 경우가 6건으로 승소 건수에 비하여 패소 건수가 높았음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총 186건 중 각하(19건) 및 소취하(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임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각하	소취하	승소+패소 (A=B+C)	승소		패소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18	32	5	14	13	9	69.2	4	30.8
2019	60	1	26	33	15	45.5	18	54.5
2020	49	5	14	30	8	26.7	22	73.3
2021	29	4	9	16	9	56.3	7	43.7
2022	16	4	2	10	4	40	6	60
합계	186	19	65	102	45	44.1	57	55.9

주: 각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에서 각하한 경우이며, 소취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 전 소를 취소한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 철저 필요
 - ‘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
 - ‘검찰 등 불기소’ 및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패소한 경우에 해당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패소 사유별 현황

(단위: 건)

구분	패소 건수	패소 사유					
		1인1개소 ¹⁾	재량권 일탈·남용	검찰 등 불기소	법원 무죄판결	일부기간 패소 ²⁾	기타 ³⁾
2018	4	-	-	-	2	2	-
2019	18	15	-	-	1	2	-
2020	22	8	9	2	2	-	1
2021	7	1	4	2	-	-	-
2022	6	-	4	-	2	-	-
합계	57	24	17	4	7	4	1

주: 1) '1인1개소 위반'이란, 의료인이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에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금 환수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패소한 것을 의미. 참고로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법」 상 1인1개소 위반도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에 추가됨

2) '일부기간 패소'란 적발개선 기간이 줄어든 경우를 의미

3) '기타'란 화해권고 결정을 의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48명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6,340	148	24	0	36	0	31	57	8	29	6	4	3	5	9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29회의 징계위원회 중 4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4.12	성희롱	6	3	3	50.0
2018.4.12	성희롱	6	3	3	50.0
2018.4.12	성희롱	6	3	3	50.0
2018.5.10	성희롱	6	1	5	16.7
2018.7.25	성희롱	5	2	3	40.0
2018.9.19	성희롱	6	3	3	50.0
2019.1.08	성추행	7	2	5	28.6
2019.1.25	성희롱	6	1	5	16.7
2019.5.23	성희롱	5	1	4	20.0
2019.6.18	성폭력	5	2	3	40.0
2019.9.03	성추행	7	3	4	42.9
2019.9.03	성희롱	7	3	4	42.9
2019.10.17	성희롱	5	2	3	40.0
2019.12.17	성희롱	6	2	4	33.3
2020.3.3	성희롱	6	3	3	50.0
2020.4.23	성추행	6	3	3	50.0
2020.4.23	성희롱	6	3	3	50.0
2020.5.11	성폭력	6	3	3	50.0
2020.5.11	성추행	6	3	3	50.0
2020.8.4	성희롱	5	3	2	60.0
2020.10.7	성희롱	6	2	4	33.3
2021.3.16	성희롱	6	3	3	50.0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22.6.2	성희롱	6	2	4	33.3
2022.9.27	성희롱	6	3	3	50.0
2022.11.21	성희롱	6	3	3	50.0
2022.12.22	성희롱	6	2	4	33.3
2022.12.22	성희롱	6	2	4	33.3
2023.4.19	성희롱	6	4	2	66.7
2023.8.17	성희롱	5	3	2	6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보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6	6	4	6	10	4
평균 처분기간	2.83	2.83	2.50	2.17	2.7	3
보수지급액	83,188	88,069	45,155	64,353	124,006	35,882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보수규정」 제14조(징계를 받은 직원의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의 경우 해당 징계기간 동안 보수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예)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35명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032	35	7	0	4	0	9	15	4	10	0	0	6	0	16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1명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740	11	1	0	1	0	3	6	0	2	0	0	1	0	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2021년 1명, 2022년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B등급)을 부여하였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주요 징계자에 대해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겠다는 입장임

가. 현황

■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0명임

중소기업은행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5	20	0	0	4	0	7	9	0	2	0	0	0	0	1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2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공공조직은행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12.21	성희롱	4	3	1	75.0
2023.4.25	성희롱	4	1	3	25.0

-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환경노동위원회



가. 일반현황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기상청 산하 3개 기관임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2개 기관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위탁형 준정부기관 4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2개 기관
-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3개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환경부 (1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1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 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3)	기타 공공기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개로 총 11개 기관임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대부분(7개 기관)을 차지함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양호(B)등급에서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하락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부 (5)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경영결과	A	B	A	A	A
			경영성과급	7,724	8,903	7,875	9,304	8,67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경영결과	C	B	B	B	B
			경영성과급	1,227	966	1,177	1,491	1,392
		국립생태원	경영결과	C	B	D	D	B
			경영성과급	921	858	1,108	0	246
		한국환경공단	경영결과	D	B	B	A	A
			경영성과급	235	477	1,142	1,117	1,636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경영결과	B	B	C	B	B
			경영성과급	771	1,471	1,542	1,056	1,188
고용 노동부 (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영결과	B	C	B	B	C
			경영성과급	716	1,036	1,013	1,222	1,28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경영결과	C	C	D	C	C
			경영성과급	704	717	774	0	1,108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경영결과	C	B	C	D	C
			경영성과급	497	827	1,144	587	117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결과	C	D	D	C	C
			경영성과급	862	603	101	532	955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영결과	A	B	B	B	B
			경영성과급	1,002	1,306	1,118	1,358	1,129
기상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경영결과	D	C	D	B	B
			경영성과급	0	0	0	0	0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2개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국립생태원임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2개임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임
 - 2022년 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2020년 대비 등급이 하락하였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부 (7)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4	4	4	3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3	4	3	4	3
		한국환경공단	5	5	4	4	2
		국립생태원	3	3	2	2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3	3	4	4
	기타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2	4	4	3
		환경보전협회	4	3	4	4	4
고용 노동부 (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3	2	3	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4	3	3	3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3	4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3	4	3	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3	3	4	3
	기타공공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3	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2	2
		노사발전재단	4	3	2	-	-
기상청 (1)	기타공공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	2	2	-	3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지아 넌스크라 출자회사 2,268억원 손상차손 발생

가. 현황

- 2022년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투자금액은 5,730억 5,600만원 이고, 투자회사는 11개(종속기업 8개, 관계기업 3개)이며 투자금액이 가장 큰 종속기업은 JSC Nenskra Hydro로 2,268억 5,000만원이 투자됨

2022년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 중인 조지아 넌스크라 출자회사

(단위: 백만원)

기업명		소재지	주식 취득연도	투자금액 (취득가액)	주요영업활동
종속 기업	JSC Nenskra Hydro	조지아	2015	226,850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 수행
전체				573,056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JSC Nenskra Hydro 사업의 총사업비는 1,054백만달러(1조 1,263억원)이며, 2022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197백만달러(2,110억원)임

JSC Nenskra Hydro(주) 투자개요 및 향후 투자계획

(단위: 백만\$,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금액(~2022년)		향후 투자금액(2023~2028년)	
		전체 투자비	한국수자원공사 투자비	전체 투자비	한국수자원공사 투자비
외화	1,054	213	197	841	81
원화	1,126,337	227,728	211,032	898,609	86,549

- 주: 1. 출자날짜 기준 전년도 말 환율 적용함('22년 출자 진행 시 '21.12.31일 환율 기준 적용)
 2. 2017년 조지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 기준으로, 향후 투자금액 및 총사업비 변경 예정임
 3. 재원조달은 자본금 30%, 차입금 70%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자본금 30% 중 88%(26.4%)를 투자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는 자회사인 JSC Nenskra Hydro(SPC)를 통해 조지아 정부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계절별 전력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발주한 민-관협력 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사업지역은 북서부 넌스크라강 유역, 시설용량은 280MW, 건설 5년 및 운영관리 36년이며, Build-Operate-Transfer 개발방식임
 - 조지아 정부가 실시협약을 통해 SPC의 전력판매 수입을 보증(약 1,100억/년)하고, Project Financing 사업으로 다자간개발은행 등 6개 대주단이 참여하며,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EPC¹⁾ Turn-key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진함
- 조지아 넌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사업계약 변경, EPC 중도해지, 조지아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

조지아 넌스크라사업 최초 계획 대비 현재 계획

구분	최초 계획	현재 계획
계약	'15.5월	'23.12월
착공	'15.8월	'24.7월
준공	'21.3월	'29.6월
운영 완료	'56.3월	'76.5월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는 JSC Nenskra Hydro에 대하여 사업 지연, 최초 협약 대비 2022년 말 기준 발전단가 고정, 미국채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장부가액 2,268억 5,000만원 전체를 손상차손 인식하였으므로, 향후 손실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외지분투자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정해진 기간/금액 내에서 계약자 주책임하에 목적물을 시공하는 계약 방식

JSC Nenskra Hydro 2022년 손상차손 인식액

(단위: 백만원)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손상차손
92.67	226,850	0	226,85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5년 조지아 정부와 발전단가를 7.75~8.214cent/kWh로 협약하였으나, 실시협약 변동으로 인해 2022년 12월 7.8cent/kWh로 발전단가가 고정됨
- 미국채 이자율²⁾의 급격한 상승(21.12월 1.94% → '22.12월 3.97%)으로 인한 할인율 상승으로 회수가능액이 하락함

JSC NENSKRA HYDRO 회수가능액 평가

할인율	할인율: 8.88% (자기자본비용 12.57%(비중 47%), 타인자본비용 5.64%(비중 53%))
요금	7.8cent/kWh - 실시협약안 기준, 15년간 3%/년 단가 상승 가정
평가 결과	NPV<0

주: NPV는 순현재가치이며, β 는 시장위험에 대한 해당 기초자산의 민감도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 무위험이자(RF) 기준 US Bond(30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필리핀 앙갓 출자회사 627억원 손실 발생

가. 현황

- 2022년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투자금액은 5,730억 5,600만원이고, 투자금액이 가장 큰 관계기업은 Angat Hydropower Co.로 1,008억 4,500만원이 투자됨

2022년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 중인 필리핀 앙갓 출자회사

(단위: 백만원)

기업명		소재지	주식 취득연도	투자금액 (취득가액)	주요영업활동
관계 기업	Angat Hydropower Co.	필리핀	2013	100,845	필리핀 Angat댐 수력발전사업 수행
전체				573,05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회사인 Angat Hydropower Co.(SPC)를 통해 필리핀 Angat댐 수력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지역은 필리핀 Luzon섬 Bulacan州에 위치하며, 시설용량은 218MW, 사업기간은 2014.11~2039.10이며, 사업비는 총 483백만달러임
 - 자본과 차입금은 45 : 55이며, 자본금은 217백만달러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분은 87백만달러(40%)이며, 필리핀의 전력시장인 WESM¹⁾에서 전력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임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1)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발전업자와 송배전업자가 실시간으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시장

- 한국수자원공사는 Angat Hydropower Co.에 대하여 2022년 발전판매단가 하락, 미국채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21.12월 1.94% → '22.12월 3.97%) 등에 따라 627억원을 손실 인식하였으므로 향후 손실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외지분 투자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손실은 투자주식 손상차손 575억원, Angat 대여금 대손상각비 52억원임

Angat Hydropower Co. 2022년 손실 인식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말 장부가액	2022년 말 장부가액	손실 인식액
투자주식	57,507	0	57,507
Angat 대여금	17,951	12,750	5,201
합계			62,708

주: 2022년 말 Angat 대여금 장부가액 중 외화평가액 1,239백만원은 제외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상업발전(2014년 10월) 개시 후, 2015~2022년까지 연평균 발전 매출을 606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필리핀 전력거래시장 단가하락(8.13 → 5.09PHP/kWh, 2022년 10월)으로 매출이 366억원으로 감소함

Angat Hydropower Co. 회수가능액 평가

할인율	할인율: 14.59% (자기자본비용 18.1%(비중 55%), 타인자본비용 10.4%(비중 45%))
단가 전망	7.5PHP/kWh - 2024년 이후 필리핀 가스전 고갈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만큼 상승 가정
평가 결과	NPV<0

주: NPV는 순현재가치이며, β 는 시장위험에 대한 해당 기초자산의 민감도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 그 현황을 공시¹⁾하여야 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2022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최근 5년간 누적된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57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누적
한국수자원공사	8	10	14	17	8	57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환경법규 위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는 총 1억 4,101만원이며, 과태료 외에 311만원의 부담금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등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벌금	과태료	과징금	기타
2018	26,780	-	26,780	-	-
2019	19,200	-	19,200	-	-
2020	39,640	-	36,530	-	3,110
2021	33,700	-	33,700	-	-
2022	24,800	-	24,800	-	-
합계	144,120	-	141,010	-	3,110

주: 기타는 초과배출부담금을 의미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지는 예산분석관 (02-6788-3745)

- 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나. 주요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누적 최대 발생

-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8건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22년에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 29건 중 27.6%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총 233건이며,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위반 건수 발생 누적치는 57건으로, 전체 중 24.5%의 비중을 차지함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5년간 누적으로도 환경법규 위반 최대 발생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 누적
한국수자원공사(a)	8	10	14	17	8	57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b)	57	51	38	58	29	233
비중(a/b)	14.0	19.6	36.8	29.3	27.6	24.5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 초과, 측정기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관리 철저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나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측정기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관리 철저 필요
- 특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나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은 수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목적과도 배치되므로 유의 필요
 -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35건으로 전체의 60.4% 차지
-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시한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

연도	위반내용	위반법령	건수
2018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4
	폐수처리공정 변경 미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1
	측정기기 COD 수질기준 초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1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미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	1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미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1
2019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7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물환경보전법」 제41조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1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3조	1
202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6건), 시험기록 보관 미비(1건)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25조	7
	폐기물 배출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38조	4
	COD측정기기 정확도 부정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1
	검사기관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	1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24조	1
2021	방류수 수질기준, 협의기준 초과(8건), 저농도 하수 유입(1건),	「하수도법」 제7조, 제19조제2항, 제25조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8조	5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2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3조	1
202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25조	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8조	2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1

주: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음영으로 표시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7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426명, 융자금액은 259억원임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489	477	471	436	448	426
융자금액	16,068,705	15,791,759	22,002,418	25,215,474	27,781,329	25,901,577
1인당 지원 한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7조(대출요건)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무주택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년 거치 15년 상환(원금균등)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2.98 * 2천만원 이하는 2%	3.22 * 2천만원 이하는 2%	2.08 * 2천만원 이하는 1.58%	1.38 * 2천만원 이하는 0.88%	1.83 * 2천만원 이하는 1.33%	2.35 * 2천만원 이하는 1.85%	4.41 * 2천만원 이하는 2%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76	1.33~4.41	7,962,000	미개정	68	7,582,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19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091명, 지원금액은 499억원임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853	1,920	1,927	1,898	2,069	2,091
지원금액	40,085,262	40,803,429	44,512,732	44,149,479	50,805,148	49,859,864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19조(대출요건)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공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7년 이내 상환(원금균등)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8	2.8	2.8	2.5	2.5	2.5	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735	2.5	31,826,000	미개정	646	30,505,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5명임

한국수자원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584	165	20	0	28	0	65	52	26	26	10	1	8	17	84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29회의 징계위원회 중 1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수자원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1.10.	성희롱	6	1	5	16.7
2018.5.14.	성추행	8	2	6	25.0
2018.6.12.	성추행	6	2	4	33.3
2018.7.12.	성추행	7	2	5	28.6
2019.5.9.	성희롱	6	3	3	50.0
2019.7.10.	성추행	6	2	4	33.3
2019.8.8.	성추행	8	3	5	37.5
2019.8.13.	성폭력	7	3	4	42.9
2019.9.25.	성추행	7	4	3	57.1
2019.11.22.	성희롱	8	4	4	50.0
2020.4.24.	성희롱	6	1	5	16.7
2020.5.26.	성추행	5	2	3	40.0
2021.5.12.	성희롱	5	1	4	20.0
2021.5.24.	성폭력	8	3	5	37.5
2021.6.22.	성희롱	5	2	3	40.0
2021.9.6.	성희롱	5	1	4	20.0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21.10.13.	성희롱	7	2	5	28.6
2021.11.2.	성희롱	9	3	6	33.3
2022.1.28.	성희롱	6	0	6	0.0
2022.2.23.	성희롱	6	1	5	16.7
2022.6.8.	성희롱	6	0	6	0.0
2022.9.21.	성희롱	4	1	3	25.0
2022.9.20.	성추행	7	4	3	57.1
2023.2.9.	성추행	8	3	5	37.5
2023.3.6.	성추행	10	2	8	20.0
2023.5.17.	성희롱	5	4	1	80.0
2023.6.8.	성추행	9	3	6	33.3
2023.7.13.	성추행	8	3	5	37.5
2023.7.13.	성희롱	6	2	4	33.3

-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 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2023년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았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5,893	51,791,246	49,324,996	101,116,242
2021	6,121	52,046,459	53,159,916	105,206,375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2021~2022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10. 징계자 성과급 미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실제 운영 사례는 향후 발생 예정이라는 입장임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비간부직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2021~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직	A	10	280	15	245	50	210	15	175	10	140	-	-
		비간부직	A	10	231	15	221	50	210	15	200	10	189	-	-
	내부 평가급	간부직	A	10	267	15	233	50	200	15	167	10	133	-	-
		비간부직	A	10	220	15	210	50	200	15	190	10	180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직	A	10	260	15	228	50	195	15	163	10	130	-	-
		비간부직	A	10	215	15	205	50	195	15	185	10	176	-	-
	내부 평가급	간부직	A	10	267	15	233	50	200	15	167	10	133	-	-
		비간부직	A	10	220	15	210	50	200	15	190	10	180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가 비간부직까지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 차등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확정(2016.1.)하였다가, 차등 확대 시행 여부를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후속조치를 시행(2017.6.)하였으므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① 해당 후속조치는 2016.1.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시행여부'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후속조치는 2016.1. 확정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보류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은 점, ③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모두 엄정한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을 뿐 비간부직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환경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51명임

한국환경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212	51	7	0	10	0	19	15	7	10	2	1	1	8	2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립공원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91%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국립공원공단은 미달성

국립공원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국립공원공단	92,670	847	0.91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91%, 2021년 0.73%, 2020년 0.64%로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립공원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65,530	419	0.64
2021	90,756	659	0.73
2022	92,670	847	0.91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립공원공단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립공원공단은 내부 규정인 「숙사 및 장기대여금」 제15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8명, 융자금액은 4억 1,000만원임

국립공원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	13	10	6	10	8
융자금액	70,000	547,000	278,000	160,000	425,000	410,000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70,000	7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숙사 및 장기대여금 운영규칙」 제15조(임차금)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무지내 무주택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3년 균등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국립공원공단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0	2.0	2.0	2.0	2.0	2.0	2.0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국립공원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8	2.0	835,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국립공원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립공원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3명임

국립공원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669	83	4	0	34	0	30	15	5	9	14	0	7	8	40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은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705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2	1	3	0	6
평가 등급	S 2명	B 1명	B 3명	-	S 2명 B 4명
징계연도	'19년 2명	'21년 1명	'18년 2명, '21년 1명	-	'18년 2명, '19년 2명, '21년 2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1,266	4,371	1,414	-	7,051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국립공원공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인사규정」 제61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국립공원공단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국립공원공단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5	13	5	3	6	2
평균 처분기간	3	1.8	2.2	3	1.7	2
보수지급액	48,098	55,930	12,848	13,339	15,273	3,991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인사규정 제61조(징계의 효력)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국립공원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립공원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국립공원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398	1,676,986	2,621,442	4,298,428
2021	1,414	1,954,557	3,042,248	4,996,805
2022	1,437	2,617,330	3,125,842	5,743,172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국립공원공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6급 이하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국립공원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B	12	73	25	64	25	55	25	46	13	37	-	-
	내부평가급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2022	경영평가성과급		B	15	73	28	64	28	55	15	46	15	37	-	-
	내부평가급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2023	경영평가성과급		B	14	94	28	83	29	70	16	58	13	46	-	-
	내부평가급	5급 이상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6급 이하		10	105	15	105	50	100	15	95	10	91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국립공원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립공원공단은 「복무규칙」 제22조부터 제27조의2까지에 따라 휴가제도를, 「인사 규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국립공원공단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국립공원공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가사유	공가	직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활동을 할 때	없음	3명(22일 5시간, 3,138천원)
휴가사유	기타휴가	8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경우 7~13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없음	311명(2,631일, 403,995천원)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국립공원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립생태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2명임

국립생태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50	72	0	0	5	0	10	57	0	3	0	0	0	4	6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국립생태원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2명(2019년 1명, 2020년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B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1,292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국립생태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립생태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국립생태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607	-	4,300,239	4,300,239
2021	647	149,796	4,472,502	4,622,298
2022	650	1,241,241	-	-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국립생태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거나 셋째 등급이 50%를 초과하였음

최근 3년간 국립생태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D	-	-	-	-	-	-	-	-	-	-	-	-
	내부평가급	-	5	30	10	26	71	22	9	19	5	15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D	15	140	16	120	31	100	23	80	14	70	-	-
	내부평가급	-	5	30	10	26	69	22	10	19	5	15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B	7	140	35	120	23	100	23	80	12	70	-	-
	내부평가급	-	-	-	-	-	-	-	-	-	-	-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국립생태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20명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90	20	3	0	2	0	2	13	2	0	0	0	0	0	1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631	485,208	6,929,229	7,414,437
2021	628	581,744	8,060,412	8,642,156
2022	671	881,958	4,031,309	4,913,267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C	7	135	14	115	50	100	21	85	8	65	-	-
	내부 평가급	연봉제		7	376	15	349	50	322	21	295	8	268	-	-
		호봉제			311		298		285		272		259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9	135	13	115	50	100	19	85	9	65	-	-
	내부 평가급	연봉제		9	376	13	349	50	322	19	295	9	268	-	-
		호봉제			311		298		285		272		259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B	9	135	13	115	50	100	19	85	9	65	-	-
	내부 평가급	연봉제		9	376	13	349	50	322	19	295	9	268	-	-
		호봉제			311		298		285		272		259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복무규정」 제12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휴가제도를,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가사유	공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	없음	1명(1일, 14만원)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위치 선정에 있어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

가. 현황

-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임
 - 2018년 시범사업 3개소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2019년에 10개소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13개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되었음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역

구분	설치지역
수도권(7)	서울 강서구(등촌동), 서울 강서구(곰달래), 서울 강서구(화곡동), 서울 마포구, 인천 연수구,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비수도권(6)	충남 계룡시, 전북 전주시, 전북 임실군, 울산 북구, 경북 영주시, 광주 광산구

자료: 근로복지공단

나.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른 설치 우선순위 지역과 다른 지역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보육아동 총원율이 낮은 문제 발생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지자체별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보육충족률, 가임여성수, 일반수급자수, 30인 미만 사업체 수, 산업단지별 고용자수 등 지역선정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 등이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지역을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는 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순위가 낮은 지역에 어린이집을 다소 설치한 상황
- 우선순위 1위(경기 안산시)부터 13위(서울 구로구)까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순위가 낮은 지역(99위, 133위, 146위, 165위)에 어린이집이 다소 설치되었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른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선 지자체 순위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안산시	21	인천	부평구	41	경기	김포시	(생 략)		
2	경남	창원시	22	경기	용인시	42	부산	부산진구	99	울산	북구
3	경기	수원시	23	경북	구미시	43	인천	남구	133	경북	영주시
4	경기	성남시	24	광주	북구	44	대전	유성구	146	충남	계룡시
5	충북	청주시	25	경남	김해시	45	서울	서초구	165	전북	임실군
6	울산	남구	26	서울	강서구	46	경기	시흥시			
7	전남	여수시	27	광주	광산구	47	경남	통영시			
8	인천	남동구	28	서울	노원구	48	경기	의정부시			
9	경기	고양시	29	서울	송파구	49	광주	서구			
10	대구	달서구	30	경기	남양주시	50	서울	은평구			
11	제주	제주시	31	경북	포항시	51	경남	양산시			
12	경기	부천시	32	경기	안양시	52	부산	사하구			
13	서울	구로구	33	대전	서구	53	서울	관악구			
14	경기	화성시	34	경기	파주시	54	전북	익산시			
15	전남	광양시	35	부산	해운대구	55	부산	북구			
16	경기	평택시	36	인천	서구	56	부산	사상구			
17	충남	천안시	37	대구	수성구	57	서울	마포구			
18	전북	전주시	38	전북	군산시	58	서울	성북구			
19	서울	강남구	39	경남	거제시	59	서울	종랑구			
20	대구	북구	40	충남	아산시	60	인천	연수구			

주: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현재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지역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8.7,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 조사」

- 또한 서울 강서구에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을 3개소나 설치하고, 광주 광산구 등 일부지역에는 도심지역 외곽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충원율이 낮은 상황이 발생

공공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정·현원 현황(2023. 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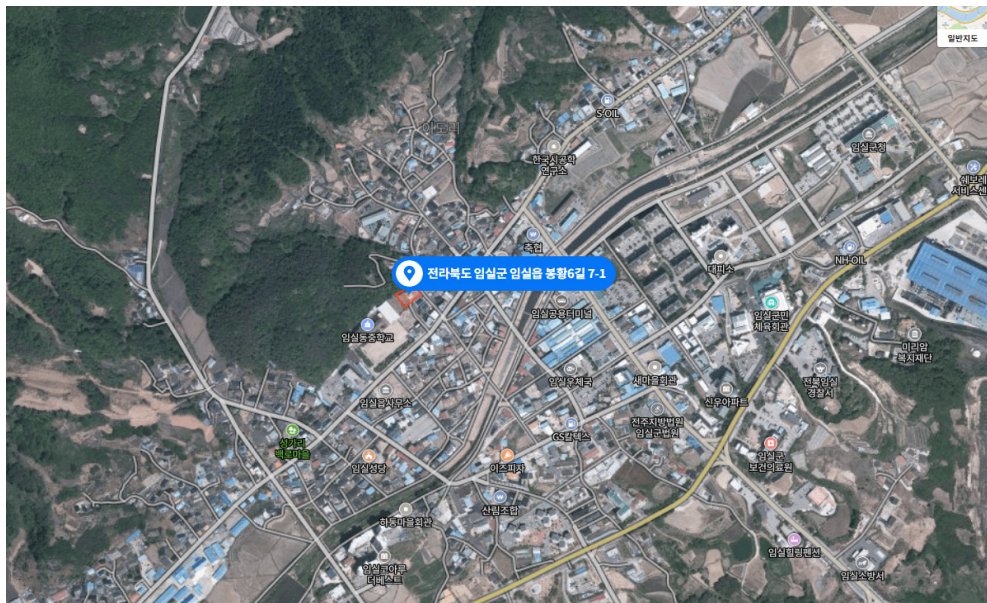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주소	개원연도	정원	현원	충원율
서울 강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3가길 42	2018	119	107	89.9
서울 강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6나길 128	2021	73	56	76.7
서울 강서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53길 30-20	2021	91	82	90.1
경기 시흥	시흥시 수풀안길 25	2020	142	135	95.1
충남 계룡	계룡시 대실남북로 177	2020	90	85	94.4
전북 전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114	2021	98	95	96.9
전북 임실	임실군 임실읍 봉황6길 7-1	2021	60	36	60.0
경기 화성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32	2021	137	100	73.0
울산 북구	울산시 북구 명촌3길 25	2021	50	45	90.0
서울 마포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49-1	2021	60	43	71.7
경북 영주	경북 영주시 향교길 108-5	2021	50	14	28.0
광주 광산	광주시 광산구 빛동8로 24	2022	70	31	44.3
인천 연수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420	2022	96	76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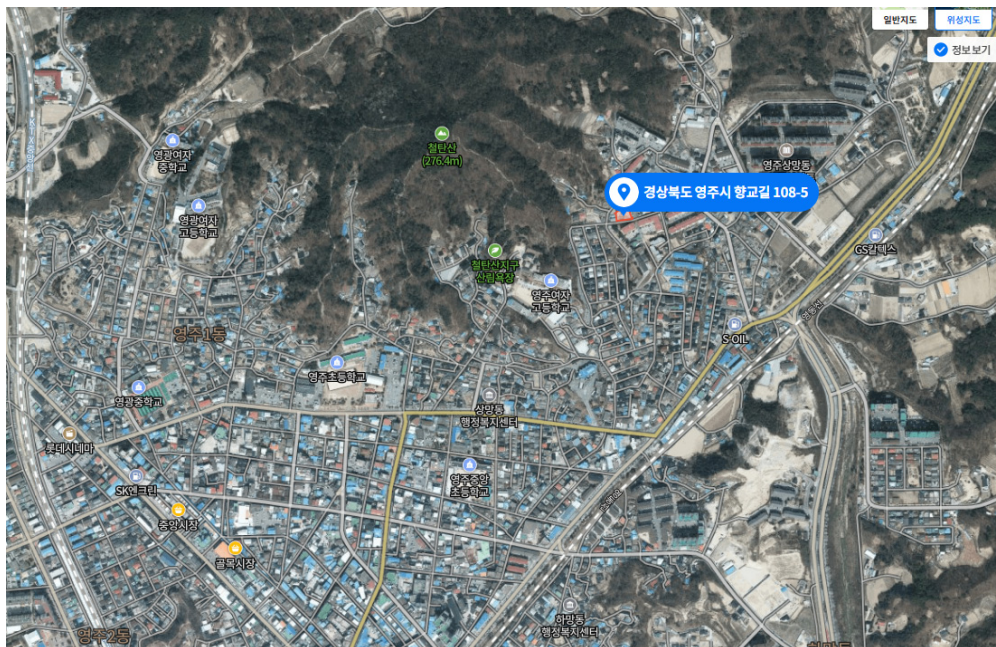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도심지역 외곽에 설치된 공공직장어린이집 현황

■ 전북 임실 공공직장어린이집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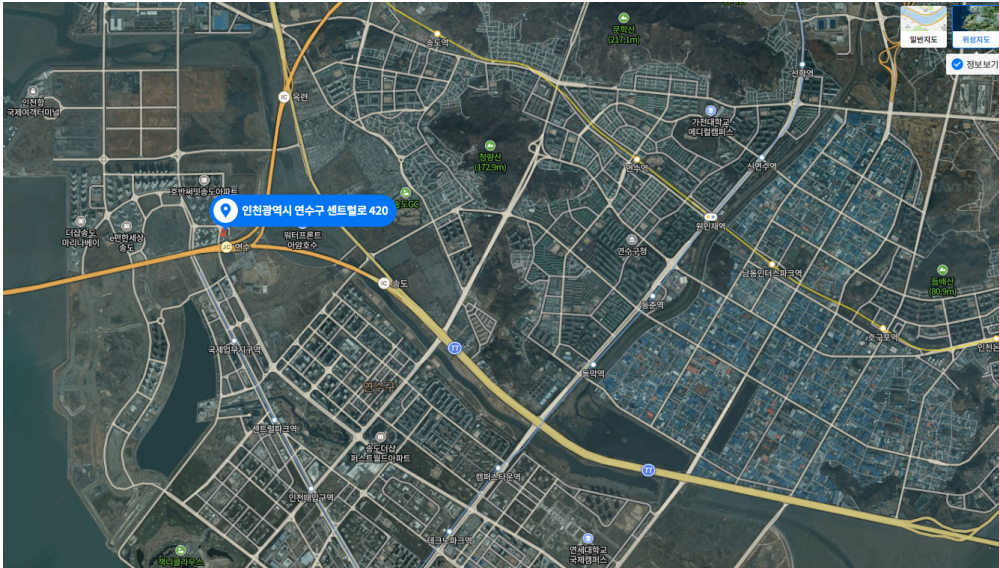


■ 경북 영주 공공직장어린이집 위치



도심지역 외곽에 설치된 공공직장어린이집 현황

■ 인천 연수구 공공직장어린이집 위치



- 근로복지공단은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에도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유에 대하여 2019년에 동 사업을 위하여 5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한 곳 대부분이 선정되었다는 입장임
 - 근로복지공단은 우선순위 1위(경기 안산시)부터 13위(서울 구로구) 지역을 포함하여 순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방문 및 전화로 거점형 사업 홍보 및 컨설팅을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관심없음’, ‘부지없음’,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서울 강서구의 경우 높은 관심을 보여 3개소가 선정되었다는 입장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린이집 수요가 낮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설치를 추진하기 보다는 예산 이월 및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2019년 당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신청 및 선정 지자체 현황

공모차수	공모년월	신청 지자체 명단	선정 지자체 명단
1차	2019.1	· 광주광역시 · 전북 전주시 · 경기 화성시 · 서울 광진구 · 서울 마포구	· 광주광역시 · 전북 전주시 · 경기 화성시 · 서울 마포구
2차	2019.4	· 서울 강서구 · 전북 임실군 · 서울 영등포구	· 서울 강서구 · 전북 임실군
3차	2019.5	신청 없음	
4차	2019.7	· 경북 영주시	· 경북 영주시
5차	2019.9	· 서울 강서구 · 서울 광진구 · 인천 연수구 · 울산 북구	· 서울 강서구 · 인천 연수구 · 울산 북구

주: 서울 광진구의 경우 1차에서는 어린이집 부지 미확보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였고, 5차에서 다시 신청하여 총 4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나 예산 잔액 상 3개 지자체만 선정이 가능하여 내부 선정과정에서 제외

근로복지공단 국외출장 시 여행대행사를 통한 가이드 및 투어비 등의 출장경비 집행 문제

가. 현황

-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에 총 12건의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3건의 출장은 여행대행사를 통하여 출장을 진행하며 건당 200~220만원의 여행사 수수료를 추가로 집행하였음

근로복지공단 여행대행사를 통한 국외출장 실시 현황(2022년)

(단위: 천원)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국가	출장기간	여행대행사	집행액
해외 주요국가의 산재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와 사례확인	백OO 국장 등 8명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1.6 ~11.13	(주)월드OOO	39,248
남유럽 임금채권보장사업 사례연구	이OO 이사 등 5명	포르투갈, 스페인	11.21~11.27	(사)지식콘텐츠OOOO	29,930
국외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제도 조사연구	최OO 국장 등 11명	싱가포르	12.5~12.9	씨에스OOO	45,598

자료: 근로복지공단

나.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여행대행사를 통하여 실시한 국외출장에 대한 출장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용차량비, 가이드비 및 팁, 투어 입장료 등의 경비도 여행대행사와 일괄 계약하여 출장비로 처리한 문제가 있음
- 또한 공식일정을 위한 기관방문 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방문 기관과 직접 연락하여 면담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여행대행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공식일정 방문비 또는 방문기관 수배비 명목)도 출장비로 처리한 문제가 있음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출장1: 해외 주요국가의 산재·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와 사례확인 출장 일정 및 집행액 세부내역

■ 출장일정

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수행내용
11. 6(일)	인천			
11. 7(월)		비엔나	AUVA(일반산재보험공단)	기관방문 및 인터뷰
11. 8(화)	비엔나		SVS(자영업자·농업인보험공단)	기관방문 및 인터뷰
11. 9(수)	비엔나	프라하	적용·징수제도 자체세미나	적용확대 방안 논의 및 수집자료 정리
11. 10(목)	프라하	팔츠 부르크	적용·징수제도 자체세미나II	적용확대 방안 논의 및 수집자료 정리
11. 11(금)	팔츠 부르크	원헨	적용·징수제도 자체세미나III	적용확대 방안 논의 및 수집자료 정리
11. 12(토)	원헨			원헨 공항 출발
11. 13(일)		인천		인천공항 도착

■ 출장비 집행내역(39,248천원)

구분	내역	수량/인원	횟수/박수	금액(원)
항공	-	8명	왕복	11,776,000
숙박	호텔	4룸	5박	3,720,000
식사	중·석식	8명	10식	2,800,000
차량/가이드	-	-	-	12,617,750
기타	가이드&기사 숙박	2룸	5박	1,450,000
	가이드&기사 식비	2명	10식	700,000
	생수 및 부대비용 등	-	-	584,400
	여행자보험	8명	-	400,000
	공식일정방문비	-	-	1,500,000
	공식일정통역비	-	-	1,500,000
여행사수수료	-	-	-	2,200,000
합 계				39,248,150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장2: 남유럽 임금채권보장사업 사례연구 출장 일정 및 집행액 세부내역

■ 출장일정

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수행내용
11. 21(월)	인천	포르투갈 (리스본)	-	-
11. 22(화)	-	-	-	기관제도 연구 및 방문준비
11. 23(수)	-	-	IGFSS(임금채권보장 정부기구)	기관 협의내용 및 수집자료 정리
11. 24(목)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마드리드)	FOGASA(임금채권보장 정부기구)	기관 협의내용 및 수집자료 정리
11. 25(금)	-	-	-	기관 방문 수집자료 정리
11. 26(토)	스페인 (마드리드)	-	-	파리 경우
11. 27(일)	-	인천	-	-

■ 출장비 집행내역(29,930천원)

구분	내역	수량/인원	횟수/박수	금액(원)
항공	-	5명	왕복	13,620,000
숙박	호텔	3룸	5박	3,150,000
전용차량비/가이드비용/팁		-	-	8,680,000
기타	투어 입장료	-	-	700,000
	방문기관 수배비	-	-	840,000
	공식일정통역비	-	-	840,000
	여행자보험	5명	-	100,000
여행사수수료	-	-	-	2,000,000
합 계				29,930,000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장3: 국외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제도 조사연구 출장 일정 및 집행액 세부내역

■ 출장일정

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수행내용
12.5(월)	인천	싱가폴	-	-
12.6(화)	-	-	메이플베어 싱가포르 어린이집(사립)	어린이집 참관 및 관계자 면담 방문기관 자료정리
12.7(수)	-	-	도시개발청 URA	싱가포르 도시 형성의 역사 탐구 싱가포르 도시계획 학습
12.8(목)	-	-	요시아몬테소리 어린이집(공립)	어린이집 참관 및 관계자 면담 어린이집 제도 반영 자료 등 정리
12.9(금)	싱가폴	인천	-	-

■ 출장비 집행내역(45,598천원)

구분	내역	수량/인원	횟수/박수	금액(원)
항공	-	11명	왕복	15,950,000
숙박	호텔	7룸	4박	11,480,000
식비	중식·석식	11명	6회	3,300,000
현지교통비(버스+기사)		-	-	6,000,000
기타	입장료	-	-	1,320,000
	방문기관 수배비	-	-	2,200,000
	여행자보험	11명	-	488,180
	픽업 및 샌딩	-	-	700,000
	번역료 등			1,960,000
여행사수수료	-	-	-	2,200,000
합 계				45,598,180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복지공단 국외출장 시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 방문 문제

가. 현황

-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5박 8일) 「오스트리아 전국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확인」을 목적으로 백OO국장 등 8명의 직원이 국외출장을 실시하였고, 관련 경비로 3,924만원을 집행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오스트리아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전 국민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오스트리아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 연구 및 운영 노하우 습득
2. 출장자
 - 백OO국장 등 8명
3. 출장기간
 - 2022. 11. 6.(일) ~ 11. 13.(일) (5박 8일)
4. 방문기관
 - 일반산재보험공단(AUVA): 근로자, 유사근로자, 비 근로자 산재보험 업무
 - 자영업자 및 농업인 보험공단(SVS): 자영업자 및 농업인 대상 사회보험 업무
5. 출장경비
 - 39,248천원

자료: 근로복지공단

나.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동 출장의 세부일정을 보면 오스트리아 도착 첫날과 둘째 날인 11월 7일(월)과 8일(화)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일반산재 보험공단(AUVA)과 자영업자 및 농업인보험공단(SVS)을 방문하여 관련자와의 면담 등 공식일정을 수행하였을 뿐, 11월 9일(수)부터 11월 12일(토)까지는 내부 토론 및 수집자료 정리 등을 위한 자체 세미나만 실시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 더욱이 자체세미나를 실시한 지역을 보면 출장목적 장소인 오스트리아(비엔나)를 벗어나 체코(프라하) → 체코(플츠부르크) → 독일(뮌헨) 등으로 출장목적 외의 지역을 이동하면서 자체 세미나를 실시
- 또한 출장목적과 상관없는 지역인 체코 및 독일 등지에서도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오스트리아 출장 일정 및 출장비 집행내역

■ 출장 일정				
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수행내용
11. 6(일)	인천			
11. 7(월)		비엔나	AUVA(일반산재보험공단)	기관방문 및 인터뷰
11. 8(화)	비엔나		SVS(자영업자·농업인보험공단)	기관방문 및 인터뷰
11. 9(수)	비엔나	프라하	적용·징수제도 자체세미나	적용확대 방안 논의 및 수집자료 정리
11. 10(목)	프라하	플츠부르크	적용·징수제도 자체세미나II	적용확대 방안 논의 및 수집자료 정리
11. 11(금)	플츠부르크	뮌헨	적용·징수제도 자체세미나III	적용확대 방안 논의 및 수집자료 정리
11. 12(토)	뮌헨			뮌헨 공항 출발
11. 13(일)		인천		인천공항 도착

■ 출장비 집행내역(39,248천원)				
구분	내역	수량/인원	횟수/박수	금액(원)
항공	-	8명	왕복	11,776,000
숙박	호텔	4룸	5박	3,720,000
식사	중·석식	8명	10식	2,800,000
차량/가이드	-	-	-	12,617,750
기타	가이드&기사 숙박	2룸	5박	1,450,000
	가이드&기사 식비	2명	10식	700,000
	생수 및 부대비용 등	-	-	584,400
	여행자보험	8명	-	400,000
	공식일정방문비	-	-	1,500,000
	공식일정통역비	-	-	1,500,000
여행사수수료	-	-	-	2,200,000
합 계				39,248,150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근로복지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24명임

근로복지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0,266	124	29	0	23	0	26	46	9	17	8	1	4	11	7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17회의 징계위원회 중 10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근로복지공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3.27	성희롱	7	6	1	85.7
2018.4.6	성희롱	6	0	6	0.0
2019.3.5	성희롱	6	1	5	16.7
2019.3.5	성희롱	6	1	5	16.7
2019.10.23	성희롱	8	1	7	12.5
2019.11.7	성희롱	4	1	3	25.0
2019.11.22	성희롱	3	2	1	66.7
2020.3.13	성희롱	5	2	3	40.0
2020.6.17	성희롱	4	3	1	75.0
2020.8.7	성희롱	5	2	3	40.0
2020.8.7	성희롱	5	2	3	40.0
2020.9.7	성희롱	4	0	4	0.0
2020.10.23	성희롱	4	1	3	25.0
2020.12.4	성추행	4	1	3	25.0
2020.12.24	성희롱	8	1	7	12.5
2021.3.5	성희롱	6	3	3	50.0
2021.4.20	성희롱	7	2	5	28.6

-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부 규정인 「직원주택자금대부규칙」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81명, 융자금액은 2,383,500천원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5	14	9	20	21	12
융자금액	150,000	400,000	270,000	595,000	615,000	358,500
1인당 지원 한도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관련 내부 규정	직원주택자금대부규칙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직원 (노인부양세대, 3자녀이상 부양세대에 한하여 3,500만원 그 외 3,000만원 한도)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년 거치, 10년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6	2.6	2.6	2.6	2.6	2.6	2.6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33	2.6	973,5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982	994,177	6,655,845	7,650,022
2021	1,959	1,607,975	6,748,301	8,356,276
2022	-	-	-	-

주: 2023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9월 확정 예정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1~2022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인원(부서) 비율이 10%를 하회하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인원 비율이 10%를 하회하거나,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였음

2021~2022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C(D)	10	134	14	110	53	100	15	90	9	67	-	-
	내부평가급	C(D)	12	134	16	110	45	100	17	90	10	67	-	-
2022	경영평가성과급	C(C)	8	134	15	110	58	100	11	90	8	67	0.28	0
	내부평가급	C(C)	9	134	17	110	51	100	13	90	9	67	0.36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여섯째 등급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003	1,263,551	1,929,520	3,193,071
2021	1,034	1,173,277	2,092,423	3,265,700
2022	-	-	-	-

주: 2022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음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1~2022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봉제의 최고 등급 등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호봉제 내부평가급이 일률적으로 100%의 지급률을 보이는 등 차등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2021~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연봉제	B	12	777	19	66	43	58	16	49	10	37	-	-
		호봉제	B	13	108	21	81	37	58	16	31	13	4	-	-
	내부 평가급	연봉제	B	12	135	19	115	43	100	16	85	10	65	-	-
		호봉제	B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연봉제	B	9	68	23	58	41	50	21	43	6	33	-	-
		호봉제	B	13	106	19	72	36	50	21	23	11	3	-	-
	내부 평가급	연봉제	B	9	135	23	115	41	100	21	85	6	65	-	-
		호봉제	B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1명임

한국고용정보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514	21	2	0	4	0	4	11	2	1	1	0	1	0	16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1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고용정보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22.12.5	성희롱	4	1	3	25.0

-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10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가. 현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53명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080	53	7	0	15	0	17	14	3	4	20	8	3	1	15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8,779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3	4	18	8	33
평가 등급	B 2명, C 1명	S 1명, B 2명, C 1명	S 1명, A 3명, B 9명, C 5명	A 2명, B 5명, C 1명	S 2명, A 5명, B 18명, C 8명
징계연도	'21년 2명 '22년 1명	'19년 1명 '20년 1명 '22년 1명 '23년 1명	'19년 1명 '20년 16명 '22년 1명	'19년 3명 '20년 4명 '22년 1명	'19년 5명 '20년 21명 '21년 2명 '22년 4명 '23년 1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5,857	12,234	44,227	25,469	87,787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국토교통위원회



가. 일반현황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기관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2개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준시장형 공기업 7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관, 건설기술교육원 등 15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28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국토교통부 (28)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 공공기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국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1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5개 기관임
-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최근 2년간 최하위(D~E)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미흡(D) 등급 평가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국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토 교통부 (15)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결과	A	B	B	C	C
			경영성과급	8,474	8,804	6,712	6,264	4,557
		한국공항공사	경영결과	B	B	B	C	C
			경영성과급	6,040	5,340	6,509	5,527	2,718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경영결과	C	C	C	B	C
			경영성과급	4,839	3,421	2,659	1,765	3,899
		주식회사 에스알	경영결과	-	D	B	C	C
			경영성과급	-	3,943	1,649	2,636	2,391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결과	B	C	B	C	D
			경영성과급	4,375	4,750	4,195	4,952	4,122
		한국도로공사	경영결과	B	A	A	A	A
			경영성과급	8,391	8,068	10,401	8,901	8,808
		한국부동산원	경영결과	B	A	A	A	B
			경영성과급	6,720	6,868	9,005	7,740	7,475
		한국철도공사	경영결과	B	D	C	E	E
			경영성과급	3,969	5,098	0	2,482	1,0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결과	A	A	D	D	D
			경영성과급	8,944	9,928	9,962	0	1,340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 관	국가철도공단	경영결과	C	A	C	B	C
			경영성과급	1,103	991	1,708	522	1,428
		국토안전관리원	경영결과	B	D	C	C	C
			경영성과급	1,903	1,615	599	886	862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결과	C	B	C	C	B
			경영성과급	1,694	1,214	1,664	1,317	1,029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결과	B	C	C	B	D
			경영성과급	2,566	1,853	1,063	806	974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경영결과	A	B	B	B	B
			경영성과급	1,870	2,139	1,897	2,376	1,836
		재단법인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	경영결과	-	D	D	D	D
			경영성과급	-	0	0	0	0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 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코레일유통(주) 등 5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국토교통부 (18)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3	3	3	4	2
		한국공항공사	4	3	2	2	3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3	4	3	4
		주택도시보증공사	4	2	2	3	3
		한국도로공사	2	4	4	3	4
		한국철도공사	3	3	4	3	2
		한국토지주택공사	4	4	4	5	4
		한국부동산원	1	-	3	2	2
		주식회사 에스알	-	-	-	2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3	3	3	3	3
		한국교통안전공단	2	2	3	3	3
		한국국토정보공사	2	2	3	3	2
		국가철도공단	3	2	4	4	4
	기타 공공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2	2	-	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	3
		주택관리공단(주)	-	-	-	3	3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3	3
		코레일유통(주)	-	-	-	5	3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2023년 기준 9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2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7개 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임
 - 준시장형 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이 있음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매출액은 40조 7,325억원, 영업이익은 1조 4,689억원, 당기순이익은 4,808억원, 영업이익률은 3.6%, 당기순이익률은 1.2%로 나타남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매출액이 5조 7,766억원, 영업이익이 3조 3,464억원, 당기순이익이 2조 508억원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은 6.8%p 감소, 당기순이익률은 4.2%p 감소하였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수익성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매출액	373,701	411,553	423,231	465,091	407,325	△57,766
영업이익	57,463	59,067	35,846	48,153	14,689	△33,464
당기순이익	39,768	35,604	16,504	25,316	4,808	△20,508
영업이익률	15.4	14.4	8.5	10.4	3.6	△6.8
당기순이익률	10.6	8.7	3.9	5.4	1.2	△4.2

주: 1. 한국철도공사는 (주)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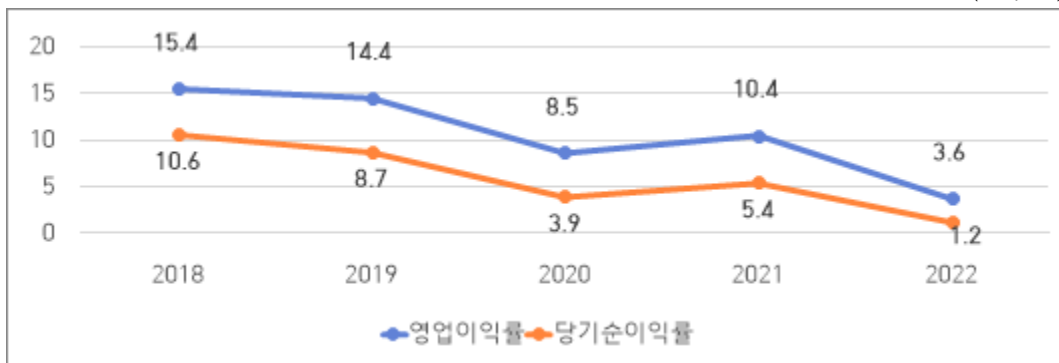
2.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매출액)×100, 당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매출액)×100으로 산출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수송 관련 기관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하락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최근 5개년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또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2018~2022)

(단위: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2022년 부채 총계는 213조 8,909억원이며, 사채 및 차입금은 135조 9,501억원, 부채비율은 155.8%, 차입금의존도¹⁾는 38.7%로 나타남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부채 총계는 13조 9,459억원, 사채 및 차입금은 11조 5,461억원, 부채비율은 0.7%p, 차입금의존도는 0.9%p 증가함

1) 금융비용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산의 전체 자산에 대한 비중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	1,775,928	1,783,349	1,863,894	1,999,450	2,138,909	139,459
사채 및 차입금	1,089,439	1,063,385	1,135,715	1,244,040	1,359,501	115,461
부채비율	166.7	157.7	154.7	155.1	155.8	0.7
차입금의존도	38.3	36.5	37.0	37.8	38.7	0.9

주: 1. 한국철도공사는 (주)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부채비율은 (부채÷자본)×100, 차입금의존도는 (사채 및 차입금÷총자산)×100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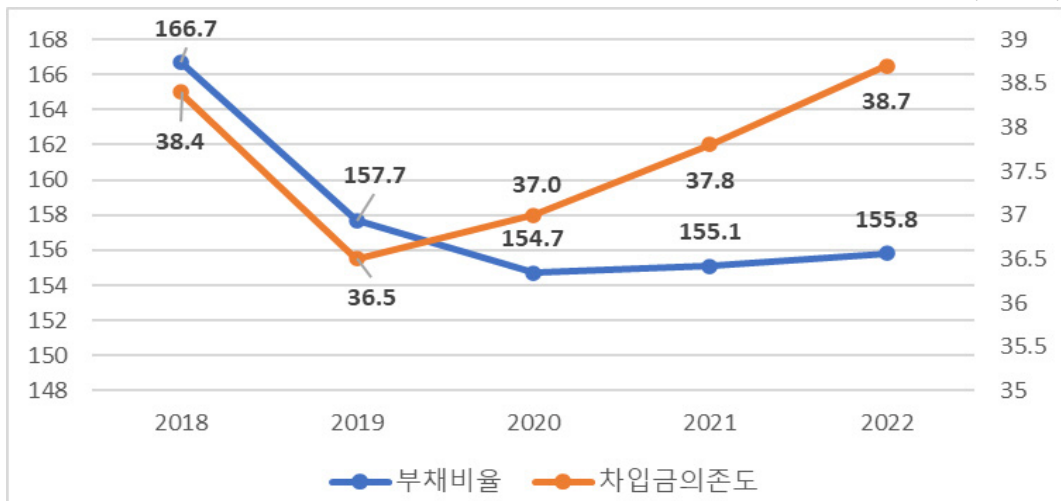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채 규모는 2020~2022년간 27조 5,01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채 및 차입금이 22조 3,786억원(81.4%)이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외부차입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2018~2022)

(단위: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나-1) 수익성

- 2022년 매출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9조 6,263억원, 한국도로공사 10조 7,795억원, 한국철도공사 5조 4,558억원 순이며, 이들 세 기관의 매출액 합계는 35조 8,616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88.0% 규모임
- 2022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4개 기관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로 2020년 이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한국철도공사는 2018-2022년 연속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건비 증가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대폭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보증료 할인 종료 및 보증실적 증가로 보증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개인보증 대위변제 급증에 따라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매출액이 5조 7,766억원, 영업이익이 3조 3,464억원, 당기순이익이 2조 508억원 감소함
 -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감소는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인하며, 이는 분양 전환 물량 감소에 따른 분양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7조 7,196억원(28.2%) 감소함에 인한 것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각각 △56.7%, △50.9%로 나타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8년, 2019년 영업이익률은 평균 46.6%, 당기순이익률은 평균 35.8%임을 고려할 때, 타 기관 대비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출액	180,338	205,298	244,336	273,459	196,263	△77,196
	영업이익	26,136	27,827	43,346	56,486	18,128	△38,358
	당기순이익	20,767	22,447	33,029	41,633	14,327	△27,306
	영업이익률	14.5	13.6	17.7	20.7	9.2	△11.5
	당기순이익률	11.5	10.9	13.5	15.2	7.3	△7.9
한국도로공사	매출액	77,945	87,219	95,575	105,351	107,795	2,444
	영업이익	9,415	12,387	6,230	6,185	8,541	2,356
	당기순이익	1,178	996	275	336	637	301
	영업이익률	12.1	14.2	6.5	5.9	7.9	2.0
	당기순이익률	1.5	1.1	0.3	0.3	0.6	0.3
한국철도공사 (별도)	매출액	55,545	56,027	44,005	51,428	54,558	3,130
	영업이익	△987	△1,446	△11,685	△8,660	△4,363	4,297
	당기순이익	△1,393	△853	△12,381	△11,081	△3,104	7,977
	영업이익률	△1.8	△2.6	△26.6	△16.8	△8.0	8.8
	당기순이익률	△2.5	△1.5	△28.1	△21.5	△5.7	15.8
주택도시 보증공사	매출액	8,190	10,596	9,760	8,798	15,194	6,396
	영업이익	6,067	4,848	3,926	4,941	△1,259	△6,200
	당기순이익	5,128	3,836	2,918	3,620	△1,126	△4,746
	영업이익률	74.1	45.8	40.2	56.2	△8.3	△64.5
	당기순이익률	62.6	36.2	29.9	41.1	△7.4	△48.5
인천국제 공항공사	매출액	27,269	28,265	11,574	5,594	10,352	4,758
	영업이익	12,987	12,898	△3,608	△9,300	△5,874	3,426
	당기순이익	11,209	8,634	△4,229	△7,506	△5,266	2,240
	영업이익률	47.6	45.6	△31.2	△166.2	△56.7	109.5
	당기순이익률	41.1	30.5	△36.5	△134.2	△50.9	83.3
한국공항공사	매출액	9,123	9,709	5,804	5,801	6,568	767
	영업이익	1,551	1,285	△2,610	△2,740	△2,050	690
	당기순이익	1,259	188	△1,487	△2,311	△1,876	435
	영업이익률	17.0	13.2	△45.0	△47.2	△31.2	16.0
	당기순이익률	13.8	1.9	△25.6	△39.8	△28.6	11.2

주: 한국철도공사는 ㈜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2) 재무건전성

-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순이며,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한 부채 규모 13조 9,459억원 중 세 기관에서 11조 7,084억원(84.0%)이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7조 7,288억원 증가함
 -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부채가 2조 5,467억원 증가함
 -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영업 및 설비자금 등을 위해 외부차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부채가 1조 4,329억원 증가함
- 2022년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24.4%p, 차입금의존도가 7.4%p 증가하였고 한국공항공사는 각각 10.3%p, 6.5%p가 증가함
- 2022년 부채비율은 주식회사 에스알 226.9%, 한국철도공사 220.6%, 한국토지주택공사 21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기관의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회사 에스알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2031년까지 계약된 임차료가 리스부채로 인식되어 2018년 104.8%이던 부채비율이 2019년 236.0%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22년 차입금의존도는 한국철도공사 48.6%, 한국도로공사 42.1%, 인천국제공항공사 40.3% 순으로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해 외부차입비율이 높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외부차입 증가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부채, 사채 및 차입금,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토지 주택공사	부채	1,280,693	1,266,800	1,297,451	1,388,884	1,466,172	77,288
	사채및차입금	693,710	659,335	688,426	752,314	816,242	63,928
	부채비율	282.9	254.2	233.6	221.3	218.7	△2.6
	차입금의존도	40.0	37.4	37.2	37.3	38.2	0.9
한국도로공사	부채	281,129	294,536	311,658	332,833	358,300	25,467
	사채및차입금	259,643	269,732	289,126	309,712	329,853	20,141
	부채비율	80.8	81.1	82.0	83.0	84.4	1.4
	차입금의존도	41.3	41.0	41.8	42.2	42.1	△0.1
한국철도공사 (별도)	부채	149,716	157,297	174,408	181,453	195,782	14,329
	사채및차입금	109,501	113,107	119,107	123,769	138,251	14,482
	부채비율	232.9	255.3	242.1	281.4	220.6	△60.8
	차입금의존도	51.2	51.7	48.3	50.3	48.6	△1.7
인천국제 공항공사	부채	35,628	29,749	40,502	54,207	68,726	14,519
	사채및차입금	20,490	14,890	27,470	43,397	57,048	13,651
	부채비율	40.5	32.0	47.9	69.8	94.2	24.4
	차입금의존도	16.6	12.1	22.0	32.9	40.3	7.4
한국공항공사	부채	4,014	4,089	7,317	11,067	14,375	3,308
	사채및차입금	0	0	3,500	7,300	10,900	3,600
	부채비율	9.4	9.6	18.1	29.1	39.4	10.3
	차입금의존도	-	-	7.3	14.9	21.4	6.5
주식회사 에스알	부채	2,790	6,692	5,800	5,640	5,771	131
	사채및차입금	1,899	1,899	1,899	1,900	1,900	0
	부채비율	104.8	236.0	237.1	255.7	226.9	△28.8
	차입금의존도	34.8	19.9	23.0	24.2	22.9	△1.3

주: 1. 한국철도공사는 (주)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부채비율은 (부채÷자본)×100, 차입금의존도는 (사채 및 차입금÷총자산)×100으로 산출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2022년 이자보상배율²⁾은 0.5배이고,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영업이익은 2018년 대비 4조 2,774원(74.4%) 감소하였으나, 이자비용은 7,542억원(19.0%) 감소하여 이자비용 감소율보다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함
- 전년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금융부채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관의 이자비용이 증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 되면서 전년 134.8배였던 이자보상배율이 △73.6배로 급락한 것에 기인함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배)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자비용	26,379	23,309	20,558	19,263	19,332	69
	이자보상배율	1.0	1.2	2.1	2.9	0.9	△2.0
한국도로공사	이자비용	8,684	8,183	7,820	7,610	8,126	516
	이자보상배율	1.1	1.5	0.8	0.8	1.1	0.3
한국철도공사 (별도)	이자비용	3,747	3,336	2,989	2,967	3,254	287
	이자보상배율	△0.3	△0.4	△3.9	△2.9	△1.3	1.6
인천국제 공항공사	이자비용	762	615	538	721	1,114	393
	이자보상배율	17.1	21.0	△6.7	△12.9	△5.3	7.6
주택도시 보증공사	이자비용	49	71	72	37	17	△20
	이자보상배율	123.6	67.9	54.8	134.8	△73.6	△208.4
한국공항공사	이자비용	0	0	17	64	186	122
	이자보상배율	-	-	△158.1	△42.8	△11.0	31.8
전체	이자비용	39,791	35,783	32,199	30,878	32,249	1,371
	이자보상배율	1.4	1.7	1.1	1.6	0.5	△1.1

주: 1. 한국철도공사는 ㈜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과 차입원가 자본화된 이자비용의 합계임

3.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산출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산출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음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 자산은 213조 6,488억원, 부채는 146조 6,172억원, 자본은 67조 316억원으로 나타남
 - 2022년 자산은 2021년 대비 11조 9,98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증가로 인한 투자부동산의 증가에 기인함
 - 부채는 2021년 138조 8,884억원 대비 7조 7,288억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주택도시 기금 출자에 따라 4조 2,699억원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 매출액은 19조 6,263억원으로 2021년 27조 3,459억원 대비 7조 7,196억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조 8,358억원, 당기 순이익은 2조 7,306억원 감소함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매출액 감소 규모가 5조 7,766억원임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자산	1,733,331	1,765,151	1,852,865	2,016,501	2,136,488	119,987
부채	1,280,693	1,266,800	1,297,451	1,388,884	1,466,172	77,288
자본	452,638	498,351	555,414	627,617	670,316	42,699
매출	180,338	205,298	244,336	273,459	196,263	△77,196
영업손익	26,136	27,827	43,346	56,486	18,128	△38,358
당기순손익	20,767	22,447	33,029	41,633	14,327	△27,306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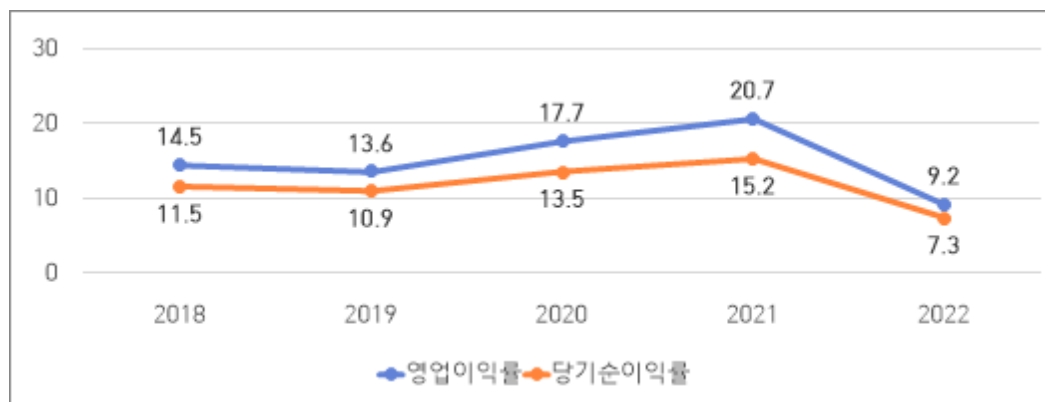
나-1) 수익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며, 이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 감소에 따른 분양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임
 - 2022년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9.2%, 당기순이익률 7.3%로 각각 전년 대비 11.5%p, 7.9%p 하락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수익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이익률	14.5	13.6	17.7	20.7	9.2	△11.5
당기순이익률	11.5	10.9	13.5	15.2	7.3	△7.9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2)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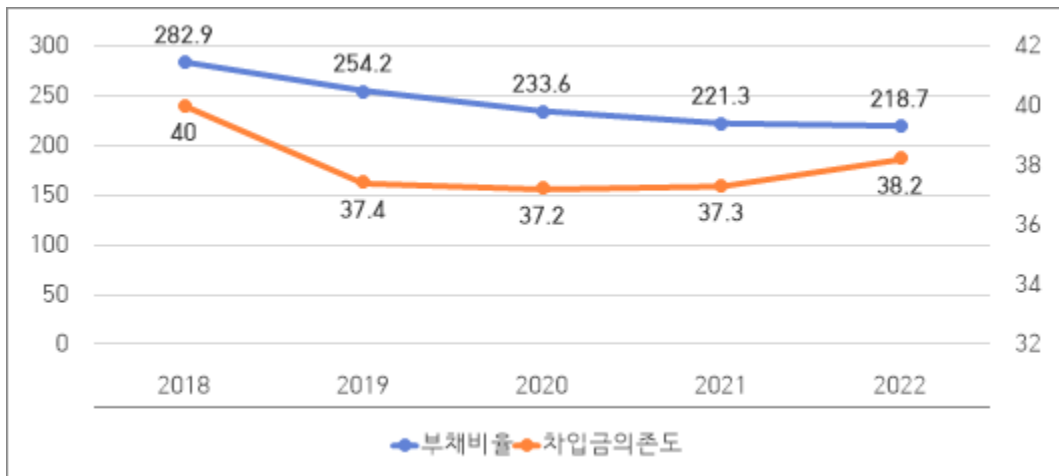
■ 부채비율은 218.7%로 전년 대비 2.6%p 감소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38.2%로 나타나 전년 대비 0.9%p 증가함

- 부채 규모는 3기 신도시 보상금 지급 등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자금조달용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 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음
- 차입금의존도 증가는 상기 자금조달용 채권 발행으로 인한 차입 부채 증가로 인한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비율	282.9	254.2	233.6	221.3	218.7	△2.6
차입금의존도	40.0	37.4	37.2	37.3	38.2	0.9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채 및 차입금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사채 및 차입금	693,710	659,335	688,426	752,314	816,242	63,92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콜센터업무 용역 자회사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2개의 자회사 중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에 7억원을 출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2018년에 설립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와 (주)LH사옥관리 등 2개의 자회사에 각각 7억원, 9.9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100% 지분을 취득함
 - 2개의 자회사 중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콜센터업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567명을 활용하여 318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8-10-16	700	567	31,844
(주)LH사옥관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018-10-16	990	1,144	54,448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18년 10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 후 2022년 말까지 자본금의 9.51배 수준의 이익잉여금 보유 중이며, 여유자금도 44.2억원으로 추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1)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와 매년 수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콜센터와 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부 유보 중인 이익잉여금이 2022년 말에 66.55억원에 이르며, 자본금 7억원 대비 9.51배 수준임
- 이익잉여금은 주로 여유자금으로 보유 중이며, 2022년 말 기준의 여유자금은 44.19억원으로 추정됨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여유자금 추정액
2019	700	△18	295	282
2020	700	206	281	195
2021	700	1,620	1,511	958
2022	700	6,665	4,802	4,419

주: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익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에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다양한 사유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현원에 비하여 계약 인원이 과다한 측면이 적지 않음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과 계약 인원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최근에 차이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6.8%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콜센터 인력수급이 불완전하여 채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임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 하지만, 2019년에도 현원 대비 계약인원의 차이는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현원 대비 높은 계약 인원으로 인하여 이익이 추가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원과 계약 인원과의 차이는 자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짐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계약 인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약 인원	현원	차이	차이비율
2019	469	429	40	9.3
2020	513	509	4	0.8
2021	598	545	53	9.7
2022	600	557	43	7.7
평균	545	510	35	6.8

주: 계약 인원과 현원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인원은 일반관리비율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현원과 계약 인원의 차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는 특히 2022년에 당기순이익, 여유자금 추정액이 급증하였는데, 계약서 상의 이윤율이 2021년 6.9%→ 2022년 8.5%로 1.6%p 증가함에 기인함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역계약 이윤율은 설립 시 2.4% → 2019년 6.9% → 2022년 8.5%까지 확대됨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손익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218	14,316	18,938	24,673	31,844
매출원가	965	13,320	17,875	21,650	25,241
영업이익	60	228	244	1,870	5,408
당기순이익	55	295	281	1,511	4,802
매출원가율	79.3	93.0	94.4	87.7	79.3
매출액순이익률	4.5	2.1	1.5	6.1	15.1
계약서 상 이윤율	2.4	6.9	6.9	6.9	8.5
이익잉여금	55	△18	206	1,620	6,665
여유자금 추정액	570	282	195	958	4,419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46.6조원에 이르며,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연결 기준) 다음으로 많으며, 2021년 대비 2022년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기관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의 현원과 계약 인원과의 차이로 인해 급증한 이익이 지속적으로 자회사 내에 잉여금화되지 않도록 계약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유보이익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환수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는 2022년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관련 사안을 의결하고, 2022년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9.5억원의 배당(배당성향 20%)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금액 급증 및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불안정

가.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의무고용률에 따라 적정수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¹⁾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시근로자수는 2018년 9,630명에서 2020년 11,119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10,58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인원도 연말 기준 2018년 308명에서 2022년 381명으로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의무고용률(A)	3.2	3.4	3.4	3.4	3.6
상시근로자수(B)	9,630	11,061	11,119	10,910	10,586
장애인의무고용인원(C=A*B)	308	376	378	370	381

주: 각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지민 예산분석관 (02-6788-373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실제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월별 위반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년 중 5개월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은 1년 중 5개월, 2022년은 1년 중 8개월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위반한 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인원을 모두 합하면 2020년 675명, 2021년 714명, 2022년 92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를 월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20년 135.0명, 2021년 142.8명, 2022년 115.3명으로 추산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 미달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월	2020			2021			2022		
	의무(A)	실제(B)	의무고용미달(A-B)	의무(A)	실제(B)	의무고용미달(A-B)	의무(A)	실제(B)	의무고용미달(A-B)
1월	365	203	162	336	210	126	369	200	169
2월	338	201	137	398	219	179	372	200	172
3월	336	202	134	346	217	129	364	199	165
4월	327	203	124	357	217	140	359	234	125
5월	322	204	118	355	215	140	368	234	134
6월	313	410	-97	338	453	-115	348	234	114
7월	371	416	-45	364	467	-103	389	362	27
8월	362	408	-46	331	457	-126	382	430	-48
9월	449	657	-208	409	555	-146	449	432	17
10월	440	648	-208	409	539	-130	401	426	-25
11월	436	638	-202	411	533	-122	382	414	-32
12월	471	628	-157	392	396	-4	384	402	-18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합계			675	-		714	-		923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평균			135.0	-		142.8	-		115.3

주: 의무(A)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말하며, 실제(B)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팅을 적용한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수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무고용 미달인원의 증가로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금액이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5%의 비중을 납부하다 2022년 4.9% 수준을 납부하고 있음
 - 납부 비중의 경우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4%p가 증가하여 특히 급격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와 비교해 보면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중 2.9%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A)	249	772	531	742	1,110
전체 공공기관(B)	16,684	20,231	29,227	29,414	22,705
전체 공공기관 내 비중 (C=A/B)	1.5	3.8	1.8	2.5	4.9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고용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2022년 모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비정규직 고용이 많음
 - 2020년의 경우 1~6월 평균 비정규직 장애인수는 31명임에 비해 7~12월 평균 비정규직 장애인수는 308명이며, 2021년의 경우 1~6월 평균 비정규직 장애인수는 37명임에 비해 7~12월 평균 비정규직 장애인수는 211명이며, 2022년의 경우 1~6월 평균 비정규직 장애인수는 15명임에 비해 7~12월 평균 비정규직 장애인수는 158명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고용 현황(2020~2022)

	2020				2021				2022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상반기 (1~6월)	969	111	142	47	985	119	138	85	950	114	55	34
상반기 월별 평균	162	19	23	8	164	20	23	14	158	19	9	6
하반기 (7~12월)	989	110	1,518	334	999	126	842	427	972	132	660	285
하반기 월별 평균	165	18	255	53	167	21	140	71	162	22	110	48

주: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의 경우 월별 데이터를 합산하여 결과 산출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반기 장애인 비정규직 채용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 인턴 채용을 하반기에 진행하기 때문임
 - 연도별 계획채용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130명, 2021년 130명, 2022년 100명임
 - 공고시점은 5월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 내외이며, 담당직무는 주거복지 등 업무보조임
 - 2022년의 경우 장애인 비정규직 채용의 70% 이상을 장애인 인턴 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 인턴 채용 공고 현황

연도	채용인원	채용공고시점	계약기간	담당직무
2020	130명	2020-05-22	6.12~12.18	주거복지 등 업무보조(서무, 민원보조 등)
2021	130명	2021-05-17	6.14~12.17	
2022	100명	2022-05-10	22.7.11~23.2.2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부분 주요사업(주택건설·주거복지·토지공급)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20	2021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급/점수)	D (79.1점)	D (71.5점)	D (76.4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79.1점(20년), 71.5점(21년), 76.4점(22년)을 평가 받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80점 이하)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공기업 전체 평균점수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점수는 76.4점으로, 101개 주요 공공기관²⁾ 중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됨³⁾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0	2021	2022
공기업(평균)	87.3	86.6	86.0
한국토지주택공사	79.1	71.5	76.4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3년 내내 모든 부분에서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책임 부분에 대한 점수가 특히 더 저조한 상황
- ‘주택 품질 개선’과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임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토지 주택공사
2020	89.4	81.4	86.0	76.9	85.1	76.5	87.1	79.2	85.8	78.1
2021	88.6	75.1	85.5	64.0	84.1	70.1	86.5	71.5	85.0	70.5
2022	88.2	79.8	84.8	71.6	83.5	74.0	85.8	76.3	84.0	76.6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주요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점수	79.1점	76.7점	76.4점	69.5점	68.5점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제2항 및 복지후생규정 제11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33명, 융자금액은 245억 463만 1,000원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41	142	147	262	337	333
융자금액	6,805,744	6,774,273	6,481,714	18,176,052	25,056,631	24,504,631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90,000	(7.31)90,000 (8.1~)7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22년도 제3차·제5차 기금이사회 의결 대출 사업기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2년 이상 재직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직원 (재직 중 1회 한정)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최장 20년(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3.5	2.9	2.9	2.4	2.4	2.9	2.9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한도의 경우 규정 개정 이전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받은 80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1인당 9천만원의 한도를 유지 중에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명)	금리 (%)	지원액 (천원)	규정 개정 여부	인원 (명)	지원액 (천원)	규정 개정 여부	인원 (명)	지원액 (천원)	규정 개정 여부
113	2.4~2.9	9,360,000	미개정	6	500,000	미개정	80	7,190,000	개정

주: 1.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2.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받은 80명은 '23.7월말 현재 1인당 9천만원 한도 대출 중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241명, 지원금액은 107,419,861천원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404	1,801	2,006	2,927	3,400	3,241
지원금액	26,493,109	47,332,211	54,309,240	101,018,290	119,047,314	107,419,861
1인당 지원 한도	30,000	40,000	40,000	50,000	(1.1~7.31) 50,000 (8.1~12.31) 30,000	3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22년도 제3차·5차 기금이사회 의결 대출 사업기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2년 이상 재직하고, 만 26세 이상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최장 7년(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3.5	2.9	2.9	2.4	2.4	2.9	2.9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918	2.4~2.9	31,446,835	미개정	727	29,266,336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297명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8,951	297	42	0	37	0	58	160	36	28	2	14	10	7	22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부정청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C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207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근무성적평정부터 중징계 처분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방침을 개정하였다는 입장이나,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19회의 징계위원회 중 4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3.14.	성희롱	9	3	6	33.3
2018.4.23.	성희롱	9	3	6	33.3
2018.6.12.	성희롱	9	3	6	33.3
2018.9.3.	성희롱	9	3	6	33.3
2018.10.22.	성희롱	9	4	5	44.4
2018.12.4.	성희롱	9	4	5	44.4
2019.4.30.	성희롱	9	3	6	33.3
2019.7.24.	성희롱	9	3	6	33.3
2019.9.18.	성희롱	9	3	6	33.3
2019.11.26.	성희롱	9	4	5	44.4
2020.3.17.	성희롱	9	3	6	33.3
2020.8.31.	성희롱	9	3	6	33.3
2021.2.24.	성희롱	9	2	7	22.2
2021.7.19.	성희롱	9	2	7	22.2
2021.10.12.	성희롱	9	2	7	22.2
2022.6.27.	성희롱	9	3	6	33.3
2022.9.05.	성희롱	9	3	6	33.3
2023.2.13.	성희롱	9	3	6	33.3
2023.4.17.	성희롱	9	2	7	22.2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기본월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	9	4	5	4	6
평균 처분기간	1.5	2	3	2.2	1.75	2.17
보수지급액	6,847	33,015	24,415	13,740	17,258	22,376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직원보수규정」 제14조(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는 그 처분기간 동안 기본월봉의 60%를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는 미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예)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9,702	0	72,825,255	72,825,255
2021	9,702	11,016,777	71,924,389	82,941,166
2022	9,726	0	68,829,629	68,829,629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D	10	0	17	0	45	0	18	0	10	0	-	-
		3급 이하			0		0		0		0		0	-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130		130		130		130		130	-	-
		3급 이하			200		200		200		200		200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D	10	40	19	35	40	30	21	25	10	20	-	-
		3급 이하			60		45		30		15		0	-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268		232		200		168		134	-	-
		3급 이하			220		210		200		190		180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D	13	0	15	0	39	0	21	0	12	0	20명	-
		3급 이하			0		0		0		0		0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200		200		200		200		200		-
		3급 이하			200		200		200		200		200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토지) 매각대금 국고 반납 및 국가재무제표에 매각이익 귀속

가. 현황

-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충남 홍성과 경기도 안산 간 서해선 철도연결을 통하여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지역개발을 촉진 도모하는 동시에 철도수송능력을 증감하고자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¹⁾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고 100% 출연 방식(일반철도건설)으로 진행 중임
 - 2022년 동 사업 예산현액 3,125억원 중 78.3%인 2,448억원이 집행되었고, 677억원이 불용됨

2022회계연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서해선 복선전철	319,500	△7,000	312,500	244,808	78.3	67,692	120,275

자료: 국토교통부

■ 2022년 국토교통부의 ‘화성시 신남제2지구 철도시설계획 변경고시’²⁾에 따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용으로 매수한 토지 중 일부가 철도건설사업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편입되었음³⁾

-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용 토지 중 신남2지구에 중첩 편입된 필지 (15,072㎡)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성 시청역주택조합 외 2개 조합에 매각한 바 있음
- 동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83억원의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토지처분이익 83억원을 국가철도공단의 손익으로 계상한 바 있음

철도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용 토지 매각

날짜	세부내역
2021.06.28	화성 신남2지구 내 철도용지 매입 협조 요청(조합→공단)
2022.08.19	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1호)
2022.08.25	환매권자 대상 공익사업 변경 통지(「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2022.09.07	매각 감정평가 시행(조합 주관)
2022.09.15	구분지상권 설정 감정평가 시행(공단 주관)
2022.09.16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조합→공단) 매각토지: 47필지, 15,072㎡, 8,385,969,500원
2022.09.23	화성시 신남2지구 편입토지 매각 및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안) 보고
2022.09.27	매매계약 체결(조합↔공단)
2022.11.16	서해선 10공구(신남2지구) 매각대금 수입처리 요청

자료: 국토교통부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1호, 2022.08.19.

3)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0공구)에 편입되어 매수한 일부 토지가 2018년 「신남2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공동주택, 도로, 공원)고시」에 중첩 포함되었음

나. 주요 쟁점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사업토지 매각으로 인한 대금을 국고에 반환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인식 중인 토지 매각이익을 국가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철도공단 일반적인 사업용토지 매수 관련 회계처리

시점	국가철도공단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토지 인식 주체	토지 소유권
사업출연금 수령	(차변) 현금	(대변) 사업출연금	-	국가
사업용 자산 매수	(차변) 건설중인자산	(대변) 현금	국가철도공단	
사업 완료-국가귀속	(차변) 정부보조금	(대변) 건설중인자산	국가	

자료: 국가철도공단

-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용토지를 매수 후, 철도건설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단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다가, 사업완료 후 국가재무제표에 동 자산을 반영함
- 즉,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집행으로 건설된 철도자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업 집행을 임시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의미일 뿐, 실질적인 공단의 자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100% 국고 부담)은 사업 종료 후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발생한 토지 매각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향후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을 매각한 것임
- 이에 토지 매각으로 수령한 현금과 국유재산 처분이익은 국가철도공단이 아닌 국가재무제표에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토지 매각대금의 국고 미반납에 따른 미지급금 83억원을 인식하였어야 함⁴⁾

4)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디브레인에 등재된 국유재산(국가철도공단이 관리) 매각 시에는 ① 용도폐지 후, ②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을 시행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국고로 즉시 납입되지만,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철도건설 중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금을 공단 입금 계좌로 납부함. 이에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토지 중 화성 신남2지구 토지 매각대금이 2022년 10월 국가철도공단 입금계좌로 납부되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중 토지매각현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공단의 수익으로 처리하였음.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중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국고 반납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공단의 토지매각이익으로 인식하였으며, 토지 매각대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공단의 일반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고로 세입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세외수입 과소계상의 문제로 이어지게 됨

국가철도공단 일반적인 사업용토지 매수 관련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현재 회계처리	(차변) 현금(유입) 8,386백만원	(대변) 건설중인자산 7,098백만원
	(차변) 정부보조금 건설중인자산 7,098백만원	(대변) 영업외이익(토지매각이익) 8,386백만원
수정안	(차변) 현금(유입) 8,386백만원	(대변) 건설중인자산 7,098백만원
	(차변) 정부보조금 건설중인자산 7,098백만원	(대변) 미지급금(부채) 8,386백만원

-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101~107p.p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토지매각대금을 2023년 8월 22일에 국고로 반납함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외수입이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출연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손익을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 그 현황을 공시¹⁾하여야 함
-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43건의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누적
국가철도공단	16	8	5	6	8	43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환경법규 위반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는 총 7,798만원이며, 최근 5년간 벌금의 경우 총 400만원 납부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등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벌금	과태료	과징금
2018	38,080	-	38,080	-
2019	16,080	-	16,080	-
2020	7,500	2,000	5,500	-
2021	15,760	2,000	13,760	-
2022	4,560	-	4,560	-
합계	81,980	4,000	77,980	-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지는 예산분석관 (02-6788-3745)

- 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나. 주요 쟁점

■ 2022년의 경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국가철도공단의 환경 법규 위반이 대부분

-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8건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9건 중 국가철도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2022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중이 27.6%임
-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총 233건이며, 이 중 국가철도 공단의 최근 5년간 위반 건수 발생 누적치는 43건으로, 전체 중 18.5%의 비중을 차지함.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 누적
국가철도공단(a)	16	8	5	6	8	43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b)	57	51	38	58	29	233
비중(a/b)	28.1	15.7	13.2	10.3	27.6	18.5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폐기물 보관 위반, 공사 관련 신고 위반, 환경영향조사 관련 사항 위반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관리 철저 필요

- 국가철도공단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물 보관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위반, 환경영향조사나 환경피해방지 조치사항 위반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관리 철저 필요
- 특히 생활소음 관련 규제 기준 초과, 공사 사전신고 위반,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위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위반 등은 철도시설 주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의 필요
-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공시한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철도공단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

연도	위반내용	위반법령	건수
2018	폐기물 보관 위반, 폐기물 혼합 보관 등	「건설폐기물법」	8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3
	시스템 입력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사후환경영향조사 미 실시, 환경피해방지 조치사항 통보 위반 등	「환경영향평가법」	4
2019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 등	「건설폐기물법」	4
	분진관리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1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반	「폐기물관리법」	1
	피해방지조치 계획서 제출 위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2
2020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법」	1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2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1
2021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2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1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1
	환경피해방지조치 계획서 통보 위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공사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2
2022	시스템 입력 의무 위반 등	「건설폐기물법」	2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1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2
	특정공사 변경신고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1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위반 등	「토양환경보전법」	2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가철도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33명임

국가철도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231	33	4	0	9	0	5	15	17	3	1	0	0	2	11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국가철도공단은 재산비위 및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192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2020.12. 내부규정 개정으로 재산비위 및 성비위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나,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은 여전히 지급 가능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1	1	0	0	2
평가 등급	D 1명	C 1명	-	-	C 1명 D 1명
징계연도	'18년 1명	'19년 1명	-	-	'18년 1명 '19년 1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715	1,209	-	-	1,924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국가철도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국가철도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국가철도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2,095	1,117,177	8,665,158	9,782,335
2021	2,200	3,028,256	8,910,456	11,938,712
2022	2,231	2,339,835	8,619,713	10,959,548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이하 내부평가급에 대해 등급과 무관하게 일괄 10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국가철도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18	25	24	22	32	19	15	16	11	13	0	0
		3급 이하		11	100	27	15	28	10	14	4	20	0	0	0
	내부 평가급	1급		10	533	21	467	38	400	21	333	10	267	-	-
		2급		10	507	19	443	41	380	19	317	10	253	-	-
		3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B	14	67	23	59	35	51	16	42	12	34	0	0
		3급 이하		11	100	21	73	38	46	20	23	11	0	0	0
	내부 평가급	1급		11	533	16	467	49	400	16	333	7	267	-	-
		2급		9	507	20	443	41	380	20	317	9	253	-	-
		3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15	50	21	45	33	40	17	32	13	25	0	0
		3급 이하		12	100	18	45	37	33	21	21	11	0	0	0
	내부 평가급	1급		13	533	21	467	38	400	19	333	10	267	-	-
		2급		9	507	20	443	40	380	20	317	9	253	-	-
		3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여섯째 등급 제외)

- 국가철도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 국가 출자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방식의 문제점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은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사업
 - 사업비용을 정부(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40%와 60% 비율로 부담하며, 정부 부담분은 한국도로공사에 출자방식으로 지원됨
 - 동 사업의 2022년도 정부 출자 예산은 2조 4,0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조 3,391억원을 집행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사업 결산 현황(2022 회계연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속도로조사	33,058	33,058	386	12,619	46,063	43,960	59	2,043
고속도로건설	2,369,484	2,307,804	-	△12,619	2,295,185	2,295,185	-	-
합계	2,402,542	2,340,862	386	-	2,341,248	2,339,145	59	2,043

자료: 국토교통부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정부 출자 예산을 우선하여 집행
 -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 예산의 집행률은 99.9%인 반면, 도로공사 자부담 예산의 집행률은 70.6%에 불과
 -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출자받은 정부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 예산을 후순위로 집행하기 때문임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2022년도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 분담 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국고					도로공사자부담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합계	23,255	23,234	0.6	20.2	99.9	22,608	15,958	6,649	2	70.6

■ 고속도로 조사

중부권내륙	2.5	2.3	-	0.2	92.0	-	-	-	-	-
태안-서산	2.5	1.9	0.6	-	76.0	-	-	-	-	-
영일만횡단대교	21.4	1.4	-	20	6.5	-	-	-	-	-
제천-영월	23.5	23.5	-	-	100.0	19.6	19.6	-	-	100.0
계영-강화	22.5	22.5	-	-	100.0	26	26	-	-	100.0
서울-양평	20.6	20.6	-	-	100.0	-	-	-	-	-
칠원-창원	5.2	5.2	-	-	100.0	29.3	19.6	-	-	66.9
김제-삼례	9.59.5	9.5	-	-	100.0	12.1	6	6.1	-	49.6
서평택-안산	3	3	-	-	100.0	19	7.7	11.3	-	40.5
당진-아산	65.4	65.4	-	-	100.0	80.4	25.4	55	-	31.6
안산-인천	13.3	13.3	-	-	100.0	98.6	47	51.6	-	47.7
세종-청주	53.7	53.7	-	-	100.0	136.7	79.8	56.9	-	58.4
부산신항-김해	19.3	19.3	-	-	100.0	128.6	93.1	35.5	-	72.4
울산외곽순환	35	35	-	-	100.0	115.1	71.8	43.3	-	62.4
서청주-증평	4.9	4.9	-	-	100.0	14	0.7	13.3	-	5.0
소계	302.3	281.5	0.6	20.2	93.1	679.4	396.7	282.7	-	58.4

■ 고속도로 건설

광주순환	160	160	-	-	100.0	571	537	34	-	94.0
화도-양평	366	366	-	-	100.0	335	234	101	-	69.9
함양-울산	4,298	4,298	-	-	100.0	3,079	2,509	570	-	81.5
파주-양주	1,118	1,118	-	-	100.0	603	413	190	-	68.5
포항-영덕	1,726	1,726	-	-	100.0	226	41	185	-	18.1
당진-천안	1,360	1,360	-	-	100.0	1,675	1,092	583	-	65.2
김포-파주	1,903	1,903	-	-	100.0	879	849	30	-	96.6
강진-광주	1,873	1,873	-	-	100.0	935	788	147	-	84.3
새만금-전주	2,150	2,150	-	-	100.0	1,141	713	428	-	62.5
안성-구리	3,604	3,604	-	-	100.0	10,357	6,525	3,832	-	63.0
세종-안성	2,497	2,497	-	-	100.0	1,509	1,393	116	-	92.3

구분	국고					도로공사자부담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양평-이천	1,122	1,122	-	-	100.0	301	298	3	-	99.0
문산-도라산	113	113	-	-	100.0	82	-	82	-	0
서창-안산	231	231	-	-	100.0	1	1	-	-	100.0
안산-북수원	378	378	-	-	100.0	65	-	65	-	0
동이-옥천	54	54	-	-	100.0	170	168	-	2	98.8
소계	22,952	22,952	-	-	100.0	21,929	15,561	6,366	2	71.0

주: 고속도로 조사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현액 및 집행액의 경우 표에 따른 노선별 금액 외에 조사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비 등(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의 금액이 추가로 집행(158억원)되었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출자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 문화재 발견, 민원 발생 등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유로 지연되는 사업에도 국가 예산은 지속 편성되어 투입 중

- 김제-삼례 노선등 9개 노선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지만, 국고집행률은 100%임

지연 중인 고속도로 사업 노선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단위: %)

노선	집행률		집행률 부진사유
	국고	도로공사	
김제-삼례	100.0	49.6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설계 지연 등
서평택-안산	100.0	40.5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설계 지연 등
당진-아산	100.0	31.6	'23년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예정에 따른 이월
안산-인천	100.0	47.7	민원 등에 따른 2구간 추진지연
세종-청주	100.0	58.4	'23년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예정에 따른 이월
서청주-증평	100.0	5.0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설계 지연 등
포항-영덕	100.0	18.1	문화재 발견(3공구)에 따른 공정지연
문산-도라산	100.0	0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 감사원감사 등에 따른 착공지연
안산-북수원	100.0	0	우·러 전쟁 및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따른 자재수급 애로 및 가격 급등

자료: 한국도로공사

- 지연 중인 노선에 대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주로 국고 예산이 집행되고, 도로공사 자부담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 상황

현재 지연 중인 노선에 대한 과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국고		공사 자부담		국고		공사 자부담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문산-도라산	11	11	0	0	39	39	0	0
당진-아산	12	12	0	0	4	4	0	0
포항-영덕	535	535	809	809	1,072	1,072	762	762
서청주-증평	1	1	13	9	0	0	3	0
안산-북수원	2020년 신규				10	10	6	0
안산-인천	2020년 신규				6	6	0	0
세종-청주	2020년 신규				1	1	0	0
김제-삼례	2021년 신규				2021년 신규			
구분	2021				2022			
	국고		공사 자부담		국고		공사 자부담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문산-도라산	5	5	0	0	113	113	82	0
당진-아산	9	9	57	52	65	65	80	25
포항-영덕	601	601	516	516	1,726	1,726	226	41
서청주-증평	0	0	3	2	5	5	14	1
안산-북수원	12	12	23	23	378	378	65	0
안산-인천	35	35	22	0	13	13	99	47
세종-청주	61	61	58	46	54	54	137	80
김제-삼례	3	3	18	9	10	10	12	6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의 출자예산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한국도로공사 미활용 및 무상임대 유휴부지 적극적 관리 필요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기준 전국에 5,996,035m²(도로공사 소유 및 국가소유)의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82.6%에 해당하는 4,957,284m²의 부지를 미활용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체 유휴부지 면적의 75.0%인 4,498,720m²는 미활용 중
 - 전체 유휴부지 면적의 7.6%인 458,564m²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 중
 - 그 밖의 부지는 물류시설 사업자나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에 임대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위탁·관리하며 일부 면적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지는 미활용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유휴부지 활용 현황(2022.12.31.기준)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중
활용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및 물류시설, 창고 등 임대	도로공사 소유	276,342	-
		국가 소유	762,409	-
		소계(A)	1,038,751	17.3
	지자체 무상임대 ¹⁾ (B)		458,564	7.6
미활용		도로공사 소유	1,053,851	-
		국가 소유	3,444,869	-
		소계(C)	4,498,720	75.0
지자체 무상임대 및 미활용(D=B+C)			4,957,284	82.6
총 합(A+B+C)			5,996,035	100

주: 지자체 무상임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편의시설(체육시설, 주차장 등)로 제공
 자료: 한국도로공사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가 유희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수입의 증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에 반영¹⁾되어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의 억제요인으로 작용 가능
 - 한국도로공사의 유희부지 임대수입은 회계상 고속도로수익에 포함되어 고속도로 총괄원가를 낮추는데 기여
-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며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례 발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수입 발생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부지를 활용한 수입 발생 지역 대표 사례

(단위: m², 백만원)

지방 자치단체	소재지	무상임대 면적	무상임대 활용사업	이용료 납부기준	연간순수입(총수입-관리비용)		
					2020	2021	2022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14-1 등	21,200	공용 주차장	1회 2,000원	252	217	296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39-4 등	11,120	화물차 주차장	월 120,000원	51	64	86
경기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5-9 등	3,390	공용 주차장	10분당 200원	- ¹⁾	24.6	54.4

주: 경기 용인시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임대 발생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한국도로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국가소유 유희부지의 경우 이를 활용한 임대수입은 도로공사 수입으로 계상되어 총괄원가에 반영되나, 매각대금은 국가에 납입함에 따라 총괄원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무상으로 유휴부지를 제공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지를 활용한 수익현황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유휴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할 뿐, 해당 부지를 활용한 수익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 한국도로공사의 유휴부지 임대수입이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휴부지 임대수입의 증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 중인 유휴부지의 수익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활용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한국도로공사 금융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A)	2019	2020	2021	2022(B)	증감 (B-A)
사채 및 차입금	259,643	269,732	289,126	309,712	329,853	70,210
부채비율	80.8	81.1	82.0	83.0	84.4	3.6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요금 상승요인이 되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과다 내부 유보 지양 필요

가. 현황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의 100%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한국도로공사가 지불하는 관련 용역비용은, 총괄원가 중 적정원가에 포함되어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침
 -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요금 서비스인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됨¹⁾
 - 이 때 건설유지비 총액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①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②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산정되므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간 용역비용은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고속도로 통행요금 총괄원가 산정 기준

구분	세부내용
총괄원가(1+2)	
1. 적정원가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관련 용역비용
2. 적정투자보수	도로 건설 등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수

자료: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02-6788-3782)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제정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기준」

나. 주요 쟁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100%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의 적정 계약체결을 통해 과다 내부유보를 지양함으로써 총괄원가를 낮춰,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연도별 손익, 이익잉여금 및 여유자금 추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자회사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한국 도로공사서비스 (2019.5.9.설립)	매출액	152,336	310,822	328,182	346,705
	영업이익	3,158	11,220	14,559	2,943
	당기순이익	2,398	8,059	16,167	7,140
	매출액순이익률	1.6	2.6	4.9	2.1
	이익잉여금	2,398	10,458	26,625	33,765
	여유자금 추정액	△ 1,492	5,832	15,363	20,962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해당 자회사는 설립연도인 201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2년 말 기준으로 337.65억원을 내부에 유보하고 있음
-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총괄원가)을 상승시키게 됨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톨게이트 수납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적정원가를 구성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업무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면, 이는 적정원가와 총괄원가를 상승시키게 되어 결국 공공요금의 증가로 이어짐

-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에서 내부유보액이 쌓이게 되면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요금 총괄원가 산정기준 상 배당금은 총괄원가를 하락시키는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배당금으로 회수되더라도 해당 이익은 총괄원가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모회사가 공공요금으로 회수하는 총괄원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는 용역계약의 주요 단계별(용역원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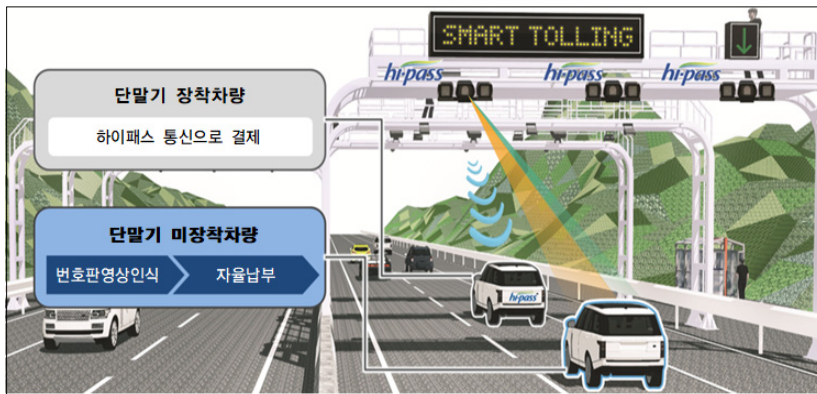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 수납시스템 설치계획, 짚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10월, 향후 설치되는 고속도로 노선의 수납시스템을 ‘스마트톨링’시스템으로 도입하기로 계획·추진¹⁾하였으나, 2018년 4월 법적·기술적 문제로 기존과 동일한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차로’ 병행 설치로 계획 변경

[참고: 스마트톨링 시스템 개요]

- 통신(하이패스) 또는 카메라(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모든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금정산 구역에서의 교통체증 방지 및 감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



- 하이패스: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OBU+결제카드)와 차로에 설치된 안테나의 통신으로 통행료 수납
- 영상인식: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경우 무정차 통과 후에 추후 운전자 등이 본인의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며, 일정 기간 미납 시 공사는 촬영된 번호판을 통해 통행료 납부 고지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스마트톨링 설치 계획 노선

구분	2022	2023	2024	2025
노선	안성구리	포항영덕, 강진광주 파주양주, 새만금전주	함양창녕	김포파주

주: 안성구리, 포항영덕, 강진광주, 파주양주, 새만금전주 노선의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 준공예정으로 변경

자료: 한국도로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의 7개 노선에 대한 요금 수납시스템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

- 계획변경에 따라 3,211억원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소지가 있음

‘스마트톨링’→‘하이패스 및 현장수납차로’ 시스템으로 변경 시 소요예산

(단위: 억원)

노선(준공예정년도)	시스템 설치 및 기반시설 공사비		
	스마트톨링 시스템(A)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차로 시스템(B)	증감(B-A)
안성구리(2024년)	5,639	7,030	1,391
포항영덕(2024년)	1,573	1,761	188
강진광주(2024년)	1,179	1,713	534
파주양주(2024년)	379	521	142
새만금전주(2024년)	440	687	247
함양창녕(2024년)	1,384	1,738	354
김포파주(2025년)	2,153	2,508	355
합계	12,747	15,958	3,211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시스템 계획단계(2015년 10월)부터 현장수납차로 설치로 변경한 시점(2018년 4월)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시스템 설치 계획 변경 사유로 ① 법적 근거 마련 불발, ② 고속축중기 개발 지연, ③ 민자고속도로 연계 협의 지연 및 시스템 구축 절대기간 부족, ④ 통행료 수납원 반발이 원인이라고 설명

요금수납시스템 설치계획 변경(스마트톨링→하이패스 및 현장수납차로) 사유

- 개인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불발
 - 영상인식에 의한 통행료 부과·수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차량 소유주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유료도로법」개정 필요)
- 고속충종기 과적단속 실효성 한계
 - 당초 스마트톨링 도입 계획상 현행 입구 단속(저속충종기) 방식을 본선상 고속충종기 및 검문소 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고속충종기의 개발 지연
- 민자연계 협의 지연 및 시스템 구축 절대기간 부족
 - 도로공사-민자노선 연계 이용차량의 요금산정 및 부과를 위해 필요한 영상약정 시스템 구축에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율이 불가피했음
- 통행료 수납원 반발
 - 수납원 노조를 중심으로 스마트톨링 도입 자체를 고용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반발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자료: 한국도로공사

- 첫째,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이 필요했다는 사유와 관련, 요금 수납 계획을 변경한 2018년 4월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 설치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조차 없던 상황²⁾
- 둘째, 도로공사-민자노선 연계 이용차량의 요금산정 및 부과를 위한 영상약정 시스템 구축에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스마트톨링 도입이 어려웠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2015년 스마트톨링 계획 수립 시점부터 2018년 계획변경 시점까지 민자노선 사업자에 대해 3차례의 설명회만 진행하였을 뿐 구체적 협의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
- 수납원 노조의 반발로 인해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도입이 어려웠다는 입장과 관련하여서도, 2018년 계획변경 당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노조와의 협의 및 설득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

2)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4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개정안의 제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입장

-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차로’ 시스템 설치 계획을 재변경하여 2026년 하반기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으나 변경 과정 또한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스마트톨링 확산’을 채택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
 - 이에 따라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차로’ 시스템으로 설치 추진 중인 안성구리 노선 등 7개 노선 또한 현장수납차로로 설치되었다가, 2026년에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전면 변경 예정
 - 특히 김포-파주 노선(2025년 준공) 요금소는 현장수납차로 설치 1년만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변경 예정
 -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설치된 요금수납차로 및 향후 7개 노선에 설치될 ‘현장수납차로’ 시스템을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략적인 비용 추계 없이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 도입 계획을 발표, 세부 실행계획은 2023년 상반기 중 수립할 것이라는 입장
 -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추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상 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가능
-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행정적·기술적 절차 및 소요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국도로공사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 자체 발전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필요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4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자체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
 - 이에 따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획했으나 2022년 기준 발전목표량(289.5GWH) 대비 실제 발전량(166.7GWH)은 57.6%에 불과

고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계획 및 추진현황

(단위: GWH,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A)		78.8	108.6	155.1	201.5	241.3	289.5	337.7	385.9	442.8
재생 에너지 실제 발전량	자산임대 사업	60.7	72.8	92.0	111.6	143.9	164.6	-	-	-
	도로공사 (자체)	0.7	0.9	1.0	1.2	1.6	2.1	-	-	-
	합계(B)	61.4	73.7	93.0	112.8	145.5	166.7	-	-	-
목표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율(B/A)		77.9	67.9	60.0	56.0	60.3	57.6	-	-	-

자료: 한국도로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실제 발전량은 동 사업이 시행된 2017년 이래로 계속해서 목표량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도로공사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극히 일부인 상황
 - 한국도로공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목표 발전량 대비 57.6%(2022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 발전량도 ‘자산임대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64.6GWH로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
 - ‘자산임대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임대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임대부지에서 구축·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고속도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에 판매
 -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자산임대사업 발전량’을 제외한 ‘한국도로공사 자체 발전량’만을 고려시, 2022년 기준 목표량 대비 0.7%에 불과

한국도로공사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단위: GWH,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A)	78.8	108.6	155.1	201.5	241.3	289.5
한국도로공사 자체 발전량(B)	0.7	0.9	1.0	1.2	1.6	2.1
목표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율(B/A)	0.9	0.8	0.6	0.6	0.7	0.7

자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재난대응 훈련 행사대행 용역 수의계약 부적절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위한 재난 대응 현장훈련을 매년 실시
 - 최근 3년간 4건의 재난대응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4건 모두 동일한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재난대응 훈련 행사대행업체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훈련명 (계약명)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계약 방법
2020년 재난대비 관련 폭설대응 현장훈련 (2020년 도로살얼음 사고 대비 재난대응 현장훈련 행사 용역)	20.11.16.	98	주식회사 엠메○○	수의 계약
2021년 재난대비 관련 폭설대응 현장훈련 (2021년 재난대비 폭설대응 현장훈련 행사용역)	21.11.10.	135		
2022년 폭설 대응 현장훈련 (2022년 청송지사 재난대비 폭설대응 현장훈련 행사 용역)	22.10.24.	101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용역)	22.11.22.	61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는 재난대응 훈련 행사대행 용역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이 넘는 4건의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긴급한 경우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훈련은 훈련 실시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국가계약법상 1억원 내외의 용역계약은 통상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약 2~3주 정도 기간이 소요¹⁾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간이 있었을 것
- 더욱이 해당 훈련은 갑자기 발생된 훈련이 아닌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것
- 또한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훈련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업체와 과업을 진행하고 계약체결은 사후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재난대응 훈련 시행계획 수립일 등 현황

(단위: 백만원)

훈련명 (계약명)	훈련		계약 체결일	계약 금액
	시행계획 수립일	훈련일		
2020년 재난대비 관련 폭설대응 현장훈련 (2020년 도로살얼을 사고 대비 재난대응 현장훈련 행사 용역)	20.10.11.	20.11.3.	20.11.16.	98
2021년 재난대비 관련 폭설대응 현장훈련 (2021년 재난대비 폭설대응 현장훈련 행사용역)	21.10.17.	21.11.11.	21.11.10.	135
2022년 폭설 대응 현장훈련 (2022년 청송지사 재난대비 폭설대응 현장훈련 행사 용역)	22.9.28.	22.11.9.	22.10.24.	101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용역)	22.10.28	22.11.24.	22.11.22.	61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구매규격 사전공개 5일→입찰공고 7일 이상→적격심사(1~2일)→기타 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2~3일)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 ‘위험부문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행 과정에서 면허가 필요한 직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이하 ‘면허수당’)도 포함되어 있음
 - 2018~2022년 동안 ‘위험부문 업무수당’은 약 206.6억원 지급되었으며, 그 중 ‘면허수당’은 약 83.1억원 지급되었음

연도별 한국도로공사 위험부문 업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지급인원	2,134	2,884	3,187	3,311	3,325	14,841
면허 필요 직무 종사자	1,235	1,535	1,784	2,103	2,089	8,746
위험부문 담당자	353	375	400	410	404	1,942
특수환경 근무자	1,752	2,488	2,809	2,968	2,977	12,994
지급액	3,235,336	3,513,642	4,885,410	4,519,715	4,507,843	20,661,946
면허 필요 직무 종사자	1,561,710	1,693,830	2,123,010	1,489,680	1,438,560	8,306,790
위험부문 담당자	148,080	161,040	165,840	180,360	182,400	837,720
특수환경 근무자	1,525,546	1,658,772	2,596,560	2,849,675	2,886,883	11,517,436

주: 업무수당은 각 항목별 중복 지급 가능하므로, 지급인원의 경우 각 항목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면허수당은 재해 등 고속도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건설기계 등의 운전 인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 지급 대상 면허는 로더, 기중기, 굴삭기, 롤러, 지게차, 대형견인차, 구난차 등임
 - 종사자가 보유한 면허 1종 당 3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인당 15만원까지 지급 가능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첫째,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관련 면허학과 공모하여 면허를 허위로 취득하여 면허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결과 대규모 징계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허수당 지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22년 한 해에만 직원 142명이 면허를 허위취득하였으며, 83명이 면허수당을 부정 취득하였음
 - 면허 허위취득자 142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138명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부정 취득한 면허수당 약 3,200만원이 환수되었음

2022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건설기계면허 허위 취득 및 면허수당 부정 취득 현황

(단위: 명)

구분	순찰직	안전직	전문직	실무직			계
				안전원	도로관리원	상황관리원	
건설기계면허 허위 취득	128	3	1	2	6	2	142
면허수당 부정 취득	77	2	0	2	2	0	83

2022년 한국도로공사 건설기계면허 허위 취득자에 대한 징계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직	감봉	견책	미징계(퇴직자)	계
징계인원	33	91	14	4	142

- 둘째, 위와 같은 대규모 징계 및 환수 조치 이후에도, 지사에 존재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자가 실제 직무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수당을 취득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바,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허수당의 지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소속 지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장비의 면허를 보유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면허수당을 취득한 자는 2022년 한 해에만 1,695명인데, 이는 2022년 전체 면허수당 취득자 2,089명 중 약 81.1%에 해당함

- 특히 소속 지사뿐만 아니라 지사가 위치한 권역 전체에 한 대도 존재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면허 보유를 이유로 면허수당을 취득한 자도 995명에 이르는데, 이는 2022년 전체 면허수당 취득자 2,089명 중 약 47.6%에 해당함

소속 지사에 없는 장비 관련 면허수당을 취득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현황

(단위: 명)

권역	로더 (5톤 이상)	기중기	굴삭기 (3톤 이상)	롤러 (포타레퍼)	지게차	대형 견인차	구난차 (렉카)	계
수도권	9	3	16	2	6	0	181	217
강원	0	7	27	2	18	10	108	172
충북	9	4	31	2	10	0	129	185
대전충남	1	11	20	0	11	0	136	179
전북	9	12	27	0	18	2	134	202
광주전남	7	14	37	2	21	14	133	228
대구경북	8	16	45	8	24	0	178	279
부산경남	9	8	28	1	13	15	153	227
기타	2	2	0	0	0	2	0	6
계	54	77	231	17	121	43	1,152	1,695

주: 2022년 기준

소속 지사가 위치한 권역 전체에 한 대도 없는 장비 관련 면허수당을 취득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현황

(단위: 명)

권역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계
수당취득 인원	181	27	131	158	134	156	186	22	995

주: 2022년 기준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55명임

한국도로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9,166	255	12	0	66	0	112	65	34	6	13	0	5	12	18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도로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월 기준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도로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	3	0	0	46	6
평균 처분기간	1	2	0	0	1.15	1.3
보수지급액	1,843	15,059	-	-	92,336	13,468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6조(징계처분 등에 따른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의 경우 월 기준급의 50%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취업규정」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휴가제도를, 「인사 규정」 제25조부터 제25조의2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한국도로공사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직사유	명령휴직	직원의 재충전 등이 필요한 경우 안식년 휴직 가능 (1년 이내)	없음	35명(8,012일)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경비 용역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3개의 자회사 중 인천국제공항보안(주)에 10억원을 출자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2017~2020년 동안 설립된 3개의 자회사에 각각 10억원씩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100% 지분을 취득함
 - 3개의 자회사 중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관련 주요 부대시설, 공항 외곽지역의 경비·방호·대테러방지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4일에 설립됨
 -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보안 검색경비 등의 업무에 2022년 말 기준으로 3,227명을 활용하여 1,739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시설·시스템유지보수 등	2017-09-13	1,000	3,528	274,168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운영지원·환경미화 등	2019-01-22	1,000	2,239	119,529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보안 검색·경비	2020-03-04	1,000	3,227	173,910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말까지 자본금의 10배 수준의 이익잉여금 보유 중이며, 여유자금도 16.1억원으로 추정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¹⁾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과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설립연도부터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그 결과, 설립 시 17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00억원이 넘고, 자본금의 10배 수준임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여유자금 추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	1,000	1,716	△3,697	97,865	1,028	1,716
2021	1,000	5,805	2,848	179,404	3,409	3,095
2022	1,000	10,034	1,609	173,910	1,311	1,609

주: 1.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2.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2022년 이익잉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이익 2021년에 994백만원, 2022년에 2,619백만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의 누적치보다 많음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보안 검색경비 등의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인원이 현원보다 많으며, 최근 연도일수록 계약 인원과 현원과의 차이는 확대되고 있음
- 계약 인원이 실제 보안 검색경비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보다 많아 발생하는 차이 인 원분에 대한 인건비 등은 자회사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게 되 지만, 모회사에서는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계약 인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약 인원	현원	차이	차이비율
2020	3,657	3,434	223	6.5
2021	3,657	3,281	376	11.5
2022	3,619	3,183	436	13.7

주: 계약 인원과 현원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인원은 일반관리비율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현원과 계약 인원의 차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자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0년부터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 차입 등의 통하여 조달하고 있음
- 그 결과,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의무가 있는 금융성 부채가 2018년 2조원에서 2022년에는 5.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재무건전성도 악화되는 추세임
- 매출이 코로나19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현원과 계약 인원 차이분이 자회사 내 잉여금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익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2,726,885	2,826,526	1,157,450	559,425	1,035,196
영업이익	1,298,658	1,289,780	△360,734	△929,998	△587,380
당기순이익	1,120,869	863,427	△422,853	△750,569	△526,603
영업활동 현금흐름	1,080,375	1,309,804	△242,626	△286,318	△93,066
투자활동 현금흐름	△328,800	△528,423	△669,470	△1,193,939	△875,647
재무활동 현금흐름	△823,086	△980,526	819,749	1,510,776	1,238,537
금융성 부채	2,049,000	1,489,000	2,747,000	4,342,650	5,708,19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8명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930	28	0	0	4	0	12	12	0	2	0	0	1	1	24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C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3,562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940	9,671,506	20,216,911	29,888,417
2021	1,930	7,129,360	20,642,683	27,772,044
2022	1,928	3,936,865	12,482,586	16,419,451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이하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B	10	175	15	141	50	131	15	121	10	88	-	-
		3급 이하	B		144		138		131		125		119	-	-
	내부 평가급	1급	10	560	15	443	50	420	15	398	10	280	-	-	
		2급		580		458		435		413		290	-	-	
		3급		263		256		250		244		238	-	-	
		이하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10	125	15	104	50	94	15	84	10	63	-	-
		3급 이하	C		106		100		94		87		81	-	-
	내부 평가급	1급	10	560	15	443	50	420	15	398	10	280	-	-	
		2급		580		458		435		413		290	-	-	
		3급		263		256		250		244		238	-	-	
		이하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D	10	67	15	60	50	50	15	40	10	33	-	-
		3급 이하	D		63		56		50		44		38	-	-
	내부 평가급	1급	10	560	15	443	50	420	15	398	10	280	-	-	
		2급		580		458		435		413		290	-	-	
		3급		263		256		250		244		238	-	-	
		이하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출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주) 지속적 손실 발생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가. 현황

-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말 기준 6개의 피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항공서비스(주)(이하, KAEMS)는 항공기 MRO¹⁾ 전문업체로 한국공항공사가 19.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는 총 1,350억원의 자본금 중 269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19.93%의 지분을 취득하였음
- 한국공항공사는 KAEMS 지분을 금융상품²⁾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269억원, 2022년 말 장부가액은 270억 4,900만원임

2022년 말 한국공항공사의 투·출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인명	주요사업	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분율
자회사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	공항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비스 사업	2,000	2,000	100.0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비스 사업	1,600	1,600	100.0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주)	보안검색, 특수경비 등 항공보안 업무	1,600	1,600	100.0
출자회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투자사업개발	10,169	11,379	2.29
출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주) (KAEMS)	항공기 정비업	26,900	27,049	19.93
출자회사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주식회사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부지 개발	500	500	100.0
합계			42,769	44,128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 1) 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사업을 뜻함
- 2) 한국공항공사는 ① 한국항공서비스(주)의 최대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공항공사 간 풋옵션(매수청구권) 및 ② 한국항공서비스(주)에 대한 일반적인 지분 취득액을 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나. 주요 쟁점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한 한국항공서비스(주)의 부진한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KAEMS의 재무상태 변동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2년의 자산총계는 178억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68.5억원 감소하였음
 - 손익현황의 경우 매출은 2019년 61억원, 2020년 144.8억원, 2021년 184.8억원, 2022년 297.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영업손실은 2019-2022년 누적 358.4억원, 당기순손실은 누적 531.5억원임

2019~2022년 한국항공서비스(주) 경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B)	증감(B-A)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129,045	129,528	97,483	111,244	△17,801
	부채총계	5,440	13,199	13,268	34,487	29,047
	자본총계	123,605	116,329	84,215	76,757	△46,848
손익계산서	매출	6,106	14,480	18,482	29,728	23,622
	영업손익	△8,580	△8,527	△10,789	△7,947	633
	당기순손익	△6,283	△7,032	△31,961	△7,876	△1,593

주: KAEMS는 2019년(2기)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였음

자료: 한국항공서비스(주)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KAEMS의 기업가치 하락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중인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하락, 즉 한국공항공사의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KAEMS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가 보유 중인 KAEMS 관련 금융상품의 가치는 2020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9.9억원 하락하였음

한국공항공사가 보유 중인 KAEMS 관련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FVPL)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금융상품 공정가치	29,986	30,806	28,035	27,049	△987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KAEMS 관련 금융상품 공정가치 하락은 한국공항공사의 당기순손실로 반영되므로 KAEMS 수익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한국공항공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매출액	9,123	9,709	5,804	5,801	6,568	767
영업이익	1,551	1,285	△2,610	△2,740	△2,050	690
당기순이익	1,259	188	△1,487	△2,311	△1,876	435

자료: 한국공항공사 연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경비 용역 자회사인 항공 보안파트너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 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한국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3개의 자회사 중 항공 보안파트너스(주)에 16억원을 출자함
 - 한국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2017~2019년 동안 설립된 3개의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100% 지분을 취득함
 - 3개의 자회사 중 항공보안파트너스(주)는 공항의 보안검색 및 특수경비 용역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22일에 설립됨
 - 항공보안파트너스(주)의 자본금은 16억원이며, 2022년 말 기준으로 2,186명을 활용하여 1,148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킴

한국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KAC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시설관리	2017-12-21	2,000	1,091	61,269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시설관리	2019-11-25	1,600	1,298	73,789
항공보안파트너스(주)	보안검색/항공경비	2019-11-22	1,600	2,186	114,857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항공보안파트너스(주)는 2019년 11월에 설립된 이후 2022년 말까지 자본금의 4.97배 수준의 이익잉여금 보유 중이며, 여유자금도 54억원으로 추정
 -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¹⁾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주)와 매년 수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항공보안파트너스(주)는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설립 시 16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79.6억 원에 이르고, 자본금의 4.97배 수준임

항공보안파트너스(주) 주요 재무 및 여유자금 추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본금	이익잉여금	여유자금 추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	1,600	△413	1,206	94,847	△448	△69
2021	1,600	1,730	2,337	104,747	1,654	1,598
2022	1,600	7,967	5,407	114,858	4,917	3,904

주: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자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0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입 등의 통하여 조달하고 있음
- 2022년 매출은 2020~2021년보다 증가하였지만, 2019년의 6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0년부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익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자비용과 원금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성 부채 잔액이 202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2년 말에는 1조원까지 증가함

한국공항공사 손익, 현금흐름 및 금융성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912,259	970,949	580,350	580,088	656,779
영업이익	155,102	128,490	△260,974	△273,980	△205,021
당기순이익	125,881	18,839	△148,659	△231,124	△187,565
영업활동 현금흐름	236,035	224,964	△139,891	△69,328	△60,719
투자활동 현금흐름	△147,464	△93,879	△201,074	△226,412	△241,987
재무활동 현금흐름	△67,904	△44,111	288,692	364,315	341,956
금융성 부채	0	0	350,000	730,000	1,090,000

자료: 한국공항공사 연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동안 344~679억원의 정부 배당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익성이 악화되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함

한국공항공사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부배당액	679	344	404	0	0

자료: 한국공항공사 연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공항공사는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주)에 잉여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용역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의 비용 효율화와 수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공항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6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호에 따라 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공항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1	27	36	48	27	0
융자금액	2,670,000	2,530,000	4,500,000	4,500,000	1,400,000	0
1인당 지원 한도	100,000	100,000	150,000	150,000	7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한국공항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6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호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부여 - 입사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생계(주민등록상)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무주택자 -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천만원 이하 대여 시 4년 원리금 균등상환 1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대여 시 7년 원리금 균등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공항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공항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37	2.56	2.23	1.50	2.15	2.58	2.60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27	2.6	1,40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공항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공항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55명임

한국공항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764	55	2	0	8	0	17	28	0	9	0	0	4	1	4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공항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9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공항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4.5.	성폭력	9	3	6	33.3
2018.8.10.	성희롱	5	2	3	40.0
2018.8.10.	성희롱	5	2	3	40.0
2020.2.21.	성희롱	8	3	5	37.5
2020.8.21.	성희롱	8	3	5	37.5
2022.5.16.	성폭력	10	4	6	40.0
2023.1.17.	성희롱	4	2	2	50.0
2023.1.17.	성희롱	4	2	2	50.0
2023.6.12.	성희롱	7	2	5	28.6

-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등으로 적자 전환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2년 자산은 8조 6,612억원, 부채는 2조 2,250억원, 자본은 6조 4,362억원으로 나타남
 - 2022년 자산은 2021년 대비 2,899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구상 채권 증가에 기인함
 - 부채는 2021년 1조 7,600억원 대비 4,650억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1,751억원 감소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5,194억원으로 2021년 8,798억원 대비 6,396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6,200억원, 당기순이익은 4,746억원 감소함
 - 최근 5개년(2018-2022)간 최초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자산	71,832	75,964	78,064	83,713	86,612	2,899
부채	16,829	18,683	18,721	17,600	22,250	4,650
자본	55,003	57,281	59,343	66,113	64,362	△1,751
매출	8,190	10,596	9,760	8,798	15,194	6,396
영업손익	6,067	4,848	3,926	4,941	△1,259	△6,200
당기순손익	5,128	3,836	2,918	3,620	△1,126	△4,746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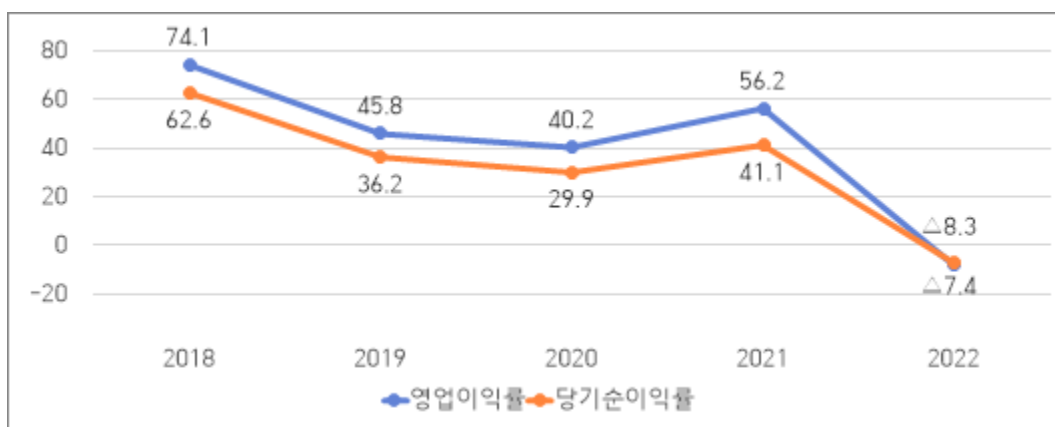
나-1) 수익성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보증료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급증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2022년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Delta 8.3\%$, 당기순이익률 $\Delta 7.4\%$ 로 각각 전년 대비 64.4%p, 48.6%p 대폭 하락함

주요 수익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이익률	74.1	45.8	40.2	56.2	$\Delta 8.3$	$\Delta 64.4$
당기순이익률	62.6	36.2	29.9	41.1	$\Delta 7.4$	$\Delta 48.6$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보증 대위변제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증금비용이 7,933억원으로 2021년 대비 5,961억원 증가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비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보증금비용	271	2,543	3,409	1,972	7,933	5,961

주: 보증 대위변제 시 손익계산서에 보증금비용으로 계상됨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2)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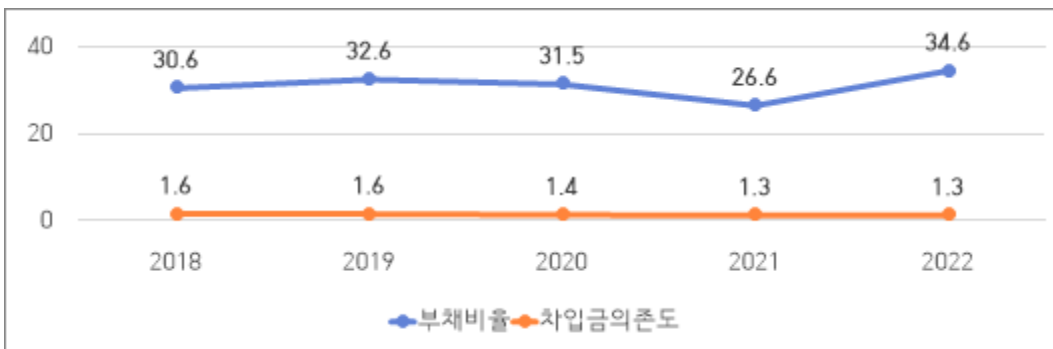
■ 부채비율은 34.6%로 전년 대비 8.0%p 증가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개인보증 사고 급증 및 손해율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¹⁾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함
- 공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없으며, 차입금은 정비사업융자수탁업무에 따른 회계상 부채만 존재하므로 차입금의존도는 1%대로 매우 낮음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비율	30.6	32.6	31.5	26.6	34.6	8.0
차입금의존도	1.6	1.6	1.4	1.3	1.3	0.0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로 적립하는 준비금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과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기업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2년 보증실적은 기업보증 118조 3,473억원(50.4%)과 개인보증 116조 3,508억원(49.6%)의 총 234조 6,981억원이며, 2022년 말 기준 보증잔액은 596조 2,424억원임

2022회계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22년말 기준)
	2021(a)	2022(b)	증감(b-a)	
기업보증	1,156,117 (49.0%)	1,183,473 (50.4%)	27,356	3,322,348
- 분양보증	711,766	686,955	△24,811	2,365,563
- 주택사업금융보증	25,189	21,276	△3,913	102,434
- 기타기업보증	419,162	475,242	56,080	854,351
개인보증	1,205,012	1,163,508	△41,504	2,640,076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15,508	554,510	39,002	1,047,641
- 주택구입자금보증	305,824	227,723	△78,101	667,095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108,699	120,952	12,253	404,654
- 기타개인보증	274,981	260,323	△14,658	520,686
합계	2,361,129 (100%)	2,346,981 (100%)	△14,148	5,962,42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보증한도란 보증배수(보증잔액/자기자본)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주택도시보증법」 제27조¹⁾ 및 동법 시행령²⁾)³⁾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2년 자기자본은 6조 6,114억원이고,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에 따라 보증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담보부보증을 제외한 보증잔액은 359조 3,971억원으로 보증배수는 54.4배

2022회계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및 자기자본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보증잔액(a)	자기자본(b)	보증배수(a/b)
금액	3,593,971	66,114	54.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배수 관리를 위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증배수를 상향하고, 정부 출자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배수가 가파른 상승을 보임

- 2021년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 보증배수를 50배에서 60배로 상향하였으며, 최근(2023.6.) 또다시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증배수를 60배에서 70배로 상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1년 보증배수 49.2배 → 2022년 보증배수 54.4배로 10%이상 급증
 -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는 지속적 상승 중이며, 보증배수의 증가 추세 또한 급증

1) 「주택도시보증법」

제27조 (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로 한다.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최근(2023년 6월)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보증한도가 70배로 상향되었으나,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아직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법정보증한도를 60배로 볼 수 있으며, 8월말 현재 해당 내용을 70배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5년간 보증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분	2018(a)	2019	2020	2021(b)	2022(c)	증가율	
						전년대비 [(c-b)/b]	2018년 대비 [(c-a)/a]
보증잔액	2,315,350	2,506,168	2,715,070	3,108,522	3,593,971	15.6	55.2
자기자본	51,498	55,003	57,281	63,243	66,114	4.5	28.4
보증배수	45.0	45.6	47.4	49.2	54.4	10.8	20.9
법정 보증배수	50			50 → 60	60	-	

주: 보증잔액은 담보부보증을 제외한 잔액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가 급증하여 2021년 당시 법정 보증한도인 50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공사의 자기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보증배수를 낮추기 위해 2021년 8월 3,900억원의 정부 출자 시행

정부 출자에 따른 보증배수 개선 내역

(단위: 억원, 배, %)

출자 일자	출자 금액	보증배수('21.12.31. 기준)	
		출자 전	출자 후
2021.8	3,900	52.4	49.2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신뢰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보증배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운용배수보다 낮은 적정 운용배수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 중

보증기관별 보증 운용배수 현황

(단위: 배)

구분	주택도시 보증공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정 보증 운용배수	60	30	20	20
적정 보증 운용배수		11.7~16.3	7~10	10~11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임대주택리츠출자 사업에서 출자된 총 84개 리츠 중 청산된 리츠는 1개로, 2022년 11월까지 임대운영 이후 청산되었음
 - 임대주택리츠출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출자한 리츠를 통하여 임대주택, 임대주택 공급부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동 사업의 출자와 관련된 출자신청서를 접수받고, 공사 내 기금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출자 사업에 대한 심사와 최종승인을 한 후, 리츠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고 있음
 - 청산된 리츠(KB동자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342억원 출자하였으며, 민간이 798억원(출자 228억원, 융자 57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2014년 11월에 설립하였고, 2015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임대운영 이후 청산되었음

KB동자민간임대리츠 자원조달구조 현황

(단위: 억원)

리츠명	사업 내용	일정	자원조달				
			주택도시기금 출자	민간			합계
				소계	출자	융자	
KB 동자	매입	리츠설립-2014.11 임대개시-2015.05 임대종료-2022.11	342	798	228	570	1,14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KB동자민간임대리츠는 청산 결과 73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성 평가 시 예측한 손익(202억원)의 365% 수준임

- KB동자민간임대리츠의 임대운영 및 청산에 따른 수익 및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운영손익은 143억원, 처분손익은 594억원이 발생하여 총 73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사업성평가 당시 예측한 운영손익 94억원, 처분손익 108억원, 순이익 202억원의 각각 152%, 550%, 365% 수준임

KB동자민간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사업성평가 결과 및 실제 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운영수익	운영비용	운영손익 (A)	처분수익	처분비용	처분손익 (B)	순이익 (A+B)
실제수익(a)	687	544	143	1,769	1,175	594	737
사업성 평가결과(b)	328	234	94	1,241	1,133	108	202
차이(a-b)	359	310	49	528	42	486	535

주: 사업성 평가결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리츠에 대한 출자 전에 리츠의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주요 쟁점

- 출자금 대비 순이익 비율이 민간에 비해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문제가 발생
 - KB동자민간임대리츠의 순이익 737억원은 주택도시기금에 163억원, 민간(거캐피털 (Gaw capital) 파트너스, 홍콩계 사모펀드)에 574억원씩 배분되었는데, 이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의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임
 - 출자금 대비 순이익 비율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47.7%인 반면 민간은 251.8%로, 민간에 비해 주택도시기금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KB동자민간임대리츠 수익 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이익(A+B)	출자금(A)	순이익(B)	출자금 대비 순이익(B/A)
주택도시기금	505	342	163	47.7
민간	802	228	574	251.8
합계	1,307	570	737	129.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는 KB동자민간임대리츠 주주간 협약이 주택도시기금이 가지고 있는 우선주에 우선 배당한 후, 남은 초과수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주택도시기금은 리츠 운영 시에는 운영수입을 통해 매년 출자금의 4.5%를 배당받고, 청산 시에는 처분수입을 통해 출자금 및 누적 배당액을 포함하여 6%의 수익률을 보장받으며, 나머지 이익은 민간에 분배됨
 - 즉, 주택도시기금에게 우선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나, 초과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게 배분되는 구조임

KB동자민간임대리츠 주주간 협약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주식의 종류 및 출자의무	(주택도시기금) 종류주식(우선주) 171만주를 342억원에 인수 (민간) 보통주식 114만주를 228억원에 인수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	(의결권)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음
배당	(종류주식) 연 4.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우선하여 배당 (보통주식) 종류주식(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모두 보통주식에 배당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방식) 다음 순서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 ① 종류주식(우선주)의 발행가액 ② 종류주식의 누적 배당액이 연 6%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③ 나머지는 보통주식에 분배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리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공사는 초과수익 발생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초과수익 공유조건을 설정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은 문제

- 동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리츠가 설립된 2014년은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현재와 상이하였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 리츠에서 임대운영한 임대주택은 용산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성 평가 시 이를 기반으로 초과수익 발생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초과수익 공유조건을 설정하여야 했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 초과수익 배분구조가 통상과 달리 민간에 100% 배분되도록 설정되어 기금의 수익이 축소되었으며, KB동자민간임대리츠와 같이 초과수익 공유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리츠들이 존재하므로 동 문제가 재발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초과수익 배분구조를 통상의 투자원칙과 달리 민간에 100% 배분되도록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을 축소하는 효과를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는 KB동자리츠와 같이 초과수익 공유조건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청산 예정인 리츠의 경우에도 재발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부터 초과수익 배분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10% 배당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12월 그 비율을 30%로 인상하였고, 2022년부터는 출자지분별로 배당하도록 수익배분 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초과수익배분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익 배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민간에게 주택도시기금의 2배 이상인 연 6~8%대 약정수익을 보장하였는데, 2022년 9월 이전까지 초과수익의 대부분이 민간에게 배분되며, 2022년 9월 이후로도 출자지분에 따라 초과수익이 민간에게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약정수익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임대리츠 수익 배분 구조 변화

구분	기간	약정수익		초과수익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시범사업	2014~2015	연 2.7%~4.0%	-	민간 보통주 100%
뉴스테이	2015.10 이전	연 3%대	연 6%~8%대	민간 보통주 100%
	2015.10~2018.11			주택도시기금에 10%
공공지원 민간임대	2018.12~2022.9	연 3%대	연 6%~8%대	주택도시기금에 30%
	2022.9~현재			출자지분별 배당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참고로, 임대주택리츠출자 사업 초기에 출자가 이루어진 리츠 중 KB동자민간임대리츠 외에 초과수익 공유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리츠는 총 12개로, 이들 12개 리츠의 재원조달 구조는 다음과 같음

초과수익 공유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리츠 현황

(단위: 억원)

리츠명	지역	리츠설립	임대개시	임대종료	재원조달				
					기금출자	기금융자	IH출자	민간출자	민간융자
A	서울 길동	2014-10	2014-02	2024-02	81	-	-	20	90
B	인천 도화	2014-03	2016-11	2026-11	255	-	-	184	647
C	천안	2014-11	2015-10	2024-04	218	-	-	145	363
D	인천 도화	2015-04	2018-02	2026-02	1,076	-	231	231	3,233
E	수원	2015-04	2018-02	2028-02	1,334	-	-	1,191	4,982
F	김포	2015-06	2018-10	2026-10	916	-	-	393	3,702
G	화성 동탄	2015-07	2018-02	2026-02	525	-	-	225	1,605
H	위례	2015-07	2017-11	2025-11	382	-	-	164	149
I	화성 동탄	2015-11	2018-06	2026-06	274	-	-	206	1,104
J	충북	2015-10	2018-07	2026-07	433	-	-	186	872
K	화성 반월	2015-08	2018-06	2026-06	660	-	-	621	2,604
L	화성 동탄	2016-01	2018-04	2026-04	504	580	-	217	72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급증 및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채권 회수하는 구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2022년 보증실적은 55조 4,510억원이며, 2022년 말 기준 보증잔액은 104조 7,641억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2022년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 그 금액은 1조 1,726억원
 - 대위변제 건수는 4,296건, 대위변제 금액은 9,241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2년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대위변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554,510	1,047,641	5,443	11,726	4,296	9,241

주: 보증잔액은 2022년도 말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부동산 경기 악화, 전세사기 급증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 급증하고 있어 손실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2022년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으며, 보증사고 금액은 1조 1,72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3% 증가함. 대위변제 역시 2022년 그 건수는 4,296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금액은 9,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누적 건수 중 2022년 보증사고 건수가 약 43%, 대위변제 건수가 약 40%를 차지하는 등 2022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급증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사고	372	792	1,630	3,442	2,048	4,682	2,799	5,790	5,443	11,726	12,713	26,543
대위변제	285	583	1,364	2,837	2,266	4,415	2,476	5,040	4,296	9,241	10,726	22,178

주: 누적은 2022년 말 기준 누적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2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2022년 동 보증의 보증사고율 역시 급증
 - 2022년 보증사고율은 건수 기준 1.19%, 금액 기준 1.13%로 전년 대비 약 67% 증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율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잔액(a)	134,448	287,293	243,721	493,930	315,602	637,904	393,162	850,481	456,999	1,040,764
보증사고금액(b)	372	792	1,630	3,442	2,408	4,682	2,799	5,790	5,443	11,726
보증사고율(b/a)	0.28	0.28	0.67	0.70	0.76	0.73	0.71	0.68	1.19	1.13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최근 5년간 변동이 거의 없어, 보증사고율과 보증료율의 격차가 2022년 크게 벌어짐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아파트	0.128		0.128		0.115	0.128	0.115	0.128	0.115	0.128
그 외	0.154		0.154		0.139	0.154	0.139	0.154	0.139	0.15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회수액은 2021년과 비슷하여 회수액과 보증료 수입만으로 대위변제금 충당이 어려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위변제액	583	1,364	2,266	5,040	9,241
대위변제 회수액	282	1,654	2,214	2,114	2,179
보증료 수입	349	554	422	319	917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보증사고 건수가 많은 소위 ‘악성임대인’의 보증사고 금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큰 반면, 대위변제 회수율은 저조하므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대책 강구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중 동일인에게 대위변제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인원은 12명, 50건 초과 100건 이하인 인원이 10명에 해당하는 등 악성임대인 문제 심각
- 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 대위변제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인원은 12명으로, 총 사고금액은 약 4,998억원, 1인당 사고금액은 416억원 이상임. 50건 초과 100건 이하의 경우 인원은 10명이고 총 사고금액은 1,741억원이며, 1인당 사고금액은 약 174억원

- 약성임대인의 보증사고는 건수 및 금액 문제 뿐만 아니라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도 존재. 대위변제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12명에 대한 회수율은 9.24%에 불과하며, 50건 초과 100건 이하인 10명에 대한 회수율은 3.83%에 불과

대위변제 건수가 2건 이상인 임대인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인원수(a)	보증사고 총 금액(b)	1인당 사고금액(b/a)	대위변제 총 금액(c)	회수액(d)	회수율(d/c)
50건 이하	725	7,772	10.72	6,563	1,986	30.27
50건 초과 100건 이하	10	1,741	174.08	1,625	62	3.83
100건 초과	12	4,998	416.47	4,623	427	9.2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¹⁾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함
 -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실적은 68조 6,955억원이며, 기업보증 실적의 약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22년 말 기준 분양보증 잔액은 236조 5,563억원으로 기업보증 전체의 약 7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22회계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22년말 기준)
	2021(a)	2022(b)	증감(b-a)	
기업보증	1,156,117	1,183,473	27,356	3,322,353
- 분양보증	711,766	686,955	△24,811	2,365,563
- 주택사업금융보증	25,189	21,276	△3,913	102,434
- 기타기업보증	419,162	475,242	56,080	854,356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지은 예산분석관(02-6788-3745)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준양보증”이라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2,604억원으로, 기업보증 전체 보증료 수입의 67%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의 누적치는 1조 1,654억원으로, 기업보증 보증료 수입(1조 7,237억원)의 68% 차지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누적
기업보증	3,605	3,855	3,321	2,576	3,880	17,237
- 주택분양보증	2,321	2,676	2,173	1,880	2,604	11,654
- (비율)	64	69	65	73	67	68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주요 쟁점

■ 주택분양보증은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 체제로 운영 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가입을 의무하고 있으며, 분양보증 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를 규정
-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을 담당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 체제로 운영 중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선 계획을 밝혔으나 2023년 8월 말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하여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 환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선되지 않음
 - 또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을 대하여 업무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3년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는 업무수행기관 미지정

분양보증 업무 독점 개선에 관한 논의 연혁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2008.10.)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2017.7.)
□ 대한주택보증(주)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가 마무리되고 주택건설업이 회복되었음을 감안,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 환원할 필요 - 방안 • '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 폐지 • 중소·지방건설업체의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 보완방안 강구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 경쟁 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분양 가격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

자료: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7.7.)를 바탕으로 재구성

■ 주택분양보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 체제를 개선할 필요

-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경우 보증료 인하 가능성 상승,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 가격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짐
-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라면 주택 공급 사업주체나 민간 보험 회사 등의 입장에서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사업주체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취지에도 부합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부보증 범위 구체화 필요 및 내규를 통한 조정 지양 필요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한도 계산에 있어서 담보부보증은 제외 중
 -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3조¹⁾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계산에 있어서 담보부보증은 보증의 총액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담보부보증이란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을 의미
- 2022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보부보증 잔액은 236조 8,456억원
 - 담보부보증 잔액 중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110조 7,63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의 반환채권이 74조 15억원으로 나타남

2022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부보증 잔액 현황

(단위: 억원)

담보물 종류	담보인정비율	잔액
현금담보	예치금의 100%	89
「담보규정」에 따른 담보	담보규정상 거래한도 금액	147,884
분양보증 사업장 신탁부지 또는 공공택지	대지비의 100%	372,831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질권설정 금액의 60%	740,01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액의 70%	1,107,637
합계		2,368,456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1)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로 한다.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 쟁점

■ 보증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담보부보증의 종류 및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에서는 담보부보증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으로 규정
-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의 종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가 불명확
- 이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사 내규인 「담보규정」에서 담보부보증의 종류나 범위를 구체화
- 그러나 담보부보증의 종류나 범위는 공사의 보증 한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사 내규로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담보부보증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보증 잔액이 동일하더라도 보증배수가 낮아지는 효과 발생

- 법정보증배수가 정해져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담보부보증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에 비해 보증배수를 낮출 유인 존재
-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담보부보증의 종류에 분양보증의 신탁부지 및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질권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보증배수를 48배 → 33.33배로 낮춘 바 있음. 또한, 2020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담보인정비율을 60% → 70%로 상향조정하여 보증배수가 낮아진 바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부보증 종류 및 범위 확대 내역

구분	당초	2015.10.	2016.10.	2020.8.
담보부보증 확대내역	· 「담보규정」상 담보	· 분양보증의 신탁부지 · 주택구입자금 보증 관련 질권채권	· 주택임차자금보증 및 조합원대출보증 분양대금반환채권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 분양보증 공공택지	·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60%→70%)
개정전 보증배수	-	48.0	48.2	47.2
개정후 보증배수	-	33.3	43.8	45.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에 대하여 기존에는 「담보규정」의 하위 규정인 「보증한도규정 시행세칙」에서 담보부보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였으나,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하여 「담보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는 입장
- 그러나 「담보규정」 역시 법령이 아닌 공사 내부 규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는 않음

■ 현재 담보부보증 잔액 중 대부분은 당초의 「담보규정」에 따른 담보가 아닌 담보부보증 종류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포함된 것

- 담보부보증의 범위를 당초의 「담보규정」에 따른 담보 및 현금만으로 계산할 경우, 2022년 말 기준 보증배수는 87.9배로, 현행(54.4배) 대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담보부보증 종류 및 범위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배수 변화

(단위: 억원, 배)

담보부보증 종류 및 범위	담보부보증 제외 보증잔액(a)	자기자본(b)	보증배수(a/b)
현행	3,593,971	66,114	54.4
현금담보 및 당초의 「담보규정」에 따른 담보	5,814,454		87.9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담보부보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와 직결되므로 이를 법령으로 직접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는 담보부보증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증배수를 낮추는 것을 지양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일괄 설정 재검토 필요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
 - 전세보증반환보증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으로 정해짐
 - 담보인정비율은 2017년부터 2023년 4월분까지 100% 적용되었으나, 2023년 5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담보인정비율 90%로 하향 조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내역

〈개인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

1. 담보인정비율 조정(전세보증)
 - ▷ 적용기준
 - 신규보증: 2023.5.1. 신청건부터 적용
 - 갱신보증: 2024.1.1. 신청건부터 적용
 -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100% → 90% 변경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 가입 불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주요 쟁점

-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높은 담보인정비율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 일괄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주택가격 대비 10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의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 높음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 조정하여 2023년 5월 이후 신청 건에 대해 보증한도 산정 시 90% 담보인정비율 적용
 -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이 심화될 경우 90%의 담보인정비율 역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시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90%로 일괄적 하향 조정
 - 담보인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주택 종류별 위험성 반영하지 않는 문제 발생
 - 공사는 2017년 이전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낮게 설정한바 있음
 - 담보인정비율은 보증사고 발생 시 대위변제금액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택 종류별 위험성을 반영한 담보인정비율 설정 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조정 내역

구분	'13.09.09.	'14.02.17	'15.05.27	'17.02.01	'23.02.08.
아파트	90%	90%	100%	100%	90%
오피스텔	80%	80%	80%	100%	90%
연립·다세대	70%	80%	80%	100%	90%
단독·다가구	70%	75%	75%	100%	90%

주: 2023년 2월 8일 조정된 내역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 적용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보증 수행

-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은 2022년 기준 보증잔액이 66조 7,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조 2,443억원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 수입은 2022년 362억원이며, 최근 5년간 총 2,061억원
- 조합주택시공보증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시공을 이행하거나 조합의 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합주택시공보증은 2022년 기준 보증잔액이 15조 7,1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80억원 감소
 - 조합주택시공보증의 보증료 수입은 2022년 48억원이며, 최근 5년간 수입은 422억원
- 주택사업금융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하여 주택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사업금융보증은 2022년 기준 보증잔액이 10조 2,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7억원 감소
 - 주택사업금융보증의 보증료 수입은 2022년 199억원으로 최근 5년간 보증료 총 수입은 2,128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의 보증 잔액 현황 및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 잔액	618,220	560,578	587,718	699,538	667,095
	보증료 수입	465	351	446	437	362
조합주택시공보증	보증 잔액	137,130	171,539	178,517	180,875	157,195
	보증료 수입	81	121	99	73	48
주택사업금융보증	보증 잔액	122,127	118,739	120,376	105,781	102,434
	보증료 수입	698	470	537	224	199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의 대위변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보증료 인하 필요성 검토 필요
 -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최근 5년간 대위변제율은 2019년(0.02%)을 제외하고 매년 금액 기준 0%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잔액 (A)	319,526	618,220	303,750	560,578	315,491	587,719	375,075	699,539	359,605	667,095
보증사고 (B)	954	1,444	852	1,390	298	535	290	555	599	1,224
보증사고율 (B/A)	0.30	0.23	0.28	0.25	0.09	0.09	0.08	0.08	0.17	0.18
대위변제 (C)	6	7	95	124	10	11	10	21	19	28
대위변제율 (C/A)	0.00	0.00	0.03	0.02	0.00	0.00	0.00	0.00	0.01	0.00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조합주택시공보증의 최근 5년간 보증사고 발생건수는 총 8건이나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위변제 금액은 없음

최근 5년간 조합주택시공보증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잔액 (A)	373	137,130	453	171,539	498	178,517	529	180,875	478	157,195
보증사고 (B)	2	110	2	321	3	456	-	-	1	57
보증사고율 (B/A)	0.54	0.08	0.44	0.19	0.60	0.26	-	-	0.21	0.04
대위변제 (C)	-	-	-	-	-	-	-	-	-	-
대위변제율 (C/A)	-	-	-	-	-	-	-	-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주택사업금융보증의 경우도 2019년 및 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최근 5년간 주택사업금융보증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잔액 (A)	564	122,127	552	118,739	635	120,376	730	105,781	803	102,434
보증사고 (B)	-	-	1	280	-	-	-	-	5	10
보증사고율 (B/A)	-	-	0.18	0.24	-	-	-	-	0.62	0.01
대위변제 (C)	-	-	1	281	-	-	-	-	1	10
대위변제율 (C/A)	-	-	0.18	0.24	-	-	-	-	0.12	0.01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반면, 위 보증들의 보증료율은 최근 5년간 변동이 거의 없어 대위변제금액 및 대위변제율을 고려할 때 보증료를 인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참고로, 공사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위변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최근 보증료율을 낮춘 바 있음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의 보증료율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주택구입 자금보증	0.13		0.13		0.13		0.13		0.13	
조합주택 시공보증	0.059	0.602	0.059	0.602	0.059	0.602	0.059	0.54	0.059	0.54
주택사업 금융보증	0.563	1.104	0.563	1.104	0.563	1.104	0.563	1.104	0.563	1.10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규정인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에 따라 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80명, 융자금액은 112억원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49	81	104	82	82	80
융자금액	5,292,287	10,120,900	13,718,500	10,804,000	11,370,200	11,203,800
1인당 지원 한도	구입: 200,000 / 임차: 150,000					
관련 내부 규정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임차) 근무지내 무주택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주택구입) 거치기간 5년 포함하여 20년 이내 상환 (주택임차) 대여기간종료일(임대차 종료일)에 일시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1.0~3.0	1.0~3.0	1.0~3.0	1.0~3.0	1.5	1.5	1.5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38	1.5~2.5	5,295,800	미개정	36	5,203,8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에 따라 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41명, 지원금액은 108억원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62	291	291	314	351	341
지원금액	9,135,236	9,705,236	9,901,236	10,407,236	11,017,236	10,792,236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본인 및 가족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대여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임의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	2.5	2.5	2.5	2.5	2.5	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49	2.5	96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3명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063	23	1	0	1	0	0	21	0	2	0	0	0	0	21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2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10.17.	성추행	5	0	5	0.0
2020.8.10.	성추행	6	0	6	0.0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징계규정」 제4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	1	-	-	-
평균 처분기간	-	-	3	-	-	-
보수지급액	-	-	2,030	-	-	-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징계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기준 및 효력)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준급의 80%를 감액 지급하고,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858	4,317,415	12,605,754	16,923,169
2021	963	4,137,985	13,765,944	17,903,929
2022	1,063	39,974	15,280,371	15,320,345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 최저 등급의 인원 비율이 10%를 소폭 하회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봉제 외 인원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내부 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B	9	134	14	110	55	100	14	90	9	66	-	-
		연봉제			134		110		100		90		66	-	-
		연봉제 외		9	110	14	105	55	100	14	95	9	90	-	-
2022	내부 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C	9	134	14	110	55	100	14	90	9	66	-	-
		연봉제			134		110		100		90		66	-	-
		연봉제 외		9	110	14	105	55	100	14	95	9	90	-	-
2023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D	9	134	14	110	55	100	14	90	9	66	-	-
		내부평가급		9	134	14	110	55	100	14	90	9	66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철도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33명임

한국철도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2,508	733	56	0	96	0	191	390	8	54	13	3	47	23	58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법률적 검토 및 노사 합의 등을 거쳐 내부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횡령 및 예산 사적 사용은 소송 등 조치를 통하여 환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 한국철도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11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징계사유가 개인적 비위행위가 아닌 자)에게 기본급(기준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철도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4	12	16	15	29	10
평균 처분기간	1.6	1.9	2.3	1.9	1.9	1.9
보수지급액	37,668	44,020	64,334	48,314	99,331	11,849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보수규정」 제11조(징계처분자의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의 경우 징계사유가 개인적 비위행위*로 처분된 자는 기본급(기본연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보수전액 미지급, ’23.4월 신설),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급(기준급)의 50퍼센트만을 지급 * 개인적비위행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매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근무 중 음주, 무단결근, 공사 자산의 사적 사용,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용, 폭행, 절도, 도박, 그 밖의 품위유지업무 위반행위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실수로 인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노조에서 동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정부 지침 준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노조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임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에스알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56명임

(주)에스알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86	56	8	0	14	0	8	26	2	0	5	0	2	2	4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주)에스알은 2018년 이후 배임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주)에스알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4명(2022년 1명, 2023년 3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C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364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주)에스알은 2022.6.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에스알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에스알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주)에스알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673	1,931,959	5,603,534	7,535,493
2021	701	1,786,218	5,990,658	7,776,876
2022	734	1,709,579	6,136,807	7,846,386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주)에스알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주)에스알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부서장	B		29	104	42	90	29	76	-	-	-	-	-	-
		부서원			43	100	34	90	1	85	18	80	4	70	-	-
	내부 평가급	부서장			29	350	42	300	29	250	-	-	-	-	-	-
		부서원			43	310	34	300	18	290	5	280	-	-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부서장	C		36	93	32	80	32	67	-	-	-	-	-	-
		부서원			2	160	4	100	30	90	36	80	25	70	3	60
	내부 평가급	부서장			36	350	32	300	32	250	-	-	-	-	-	-
		부서원			4	320	30	310	38	300	25	290	3	280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부서장	C		40	93	30	80	30	67	-	-	-	-	-	-
		부서원			5	100	20	90	38	80	32	70	4	60	1	0
	내부 평가급	부서장			39	350	32	300	29	250	-	-	-	-	-	-
		부서원			5	320	21	310	38	300	32	290	4	280	0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주)에스알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에스알은 「취업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의3까지에 따라 휴가제도를,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주)에스알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주)에스알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주)에스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가사유	청원휴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시 1일 휴가 부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결혼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본인과 자녀까지만 허용	68명(83일, 8,583,694원)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주)에스알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부동산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한국부동산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알이비파트너스(주)에 5억원을 출자함
 - 알이비파트너스(주)는 정부의 고용정책을 위한 방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00% 출자하여 2018년 11월 1일에 설립됨
 - 알이비파트너스(주)는 한국부동산원 사옥관리, 시장관리사업 업무지원, 부동산조사 업무지원, 상담센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동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5억원이며, 2022년 말 기준 인원은 일반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총 224명이고, 2022년 매출액은 109.6억원임

한국부동산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 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알이비파트너스(주)	사옥관리, 시장관리사업 업무지원, 부동산조사 업무지원, 상담센터 위탁운영 등	2018-11-01	500	224	10,963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부동산원의 자회사 알이비파트너스(주)는 모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2022년 말 17.7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 중임
 - (주)강원랜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¹⁾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하이원파트너스(주)와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함
 - 하이원파트너스(주)는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2018년 11월에 설립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2022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되어 내부 유보이익이 확대되고 있음
 - 그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의 3.5배에 이르는 이익잉여금 17.7억원이 내부 유보 중이며, 여유자금 추정액은 12.4억원에 이름
 - 100%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에 여유자금을 중심으로 이익이 확대되는 것은 용역계약의 또 다른 주체인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하이원파트너스(주)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여유자금 추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	500	△47	85	0	△60	△47
2019	500	88	△322	6,748	151	135
2020	500	286	32	8,266	368	273
2021	500	1,043	470	9,695	911	734
2022	500	1,774	1,241	10,963	612	707

주: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정부(기획재정부)(49.4%), 한국산업은행(3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19억원의 정부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9	18	13	10	16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부동산원은 지출 측면에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자회사 내 여유자금의 형태로 유보 중인 잉여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하도록 하여 수익성을 제고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배당가능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부동산원은 내부 규정인 「주택구입자금관리요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2명, 융자금액은 16억 5,000만원임

한국부동산원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4	18	17	18	17	12
융자금액	2,494,600	2,008,000	2,203,000	2,283,000	2,194,000	1,650,000
1인당 지원 한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구입자금관리요강, 주택임차자금관리요강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6개월이상 재직)와 만35세이상 미혼단독 세대주(7년이상 재직)(공통) ② 주택구입가격 9억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구입(주택구입자금) ③ 대출한도 LTV 70% 이하 적용(주택구입자금) ④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임차(주택임차자금)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3년 거치 12년 상환(주택구입자금), 15년상환(주택임차자금)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부동산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부동산원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2.7	2.7	2.7	2.2	2.2	2.2	2.2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용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용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부동산원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29	2.2	3,844,000	미개정	27	3,75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부동산원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부동산원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가계자금 대여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10명, 지원금액은 31억원임

한국부동산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30	145	153	194	97	110
지원금액	3,449,333	3,828,500	4,156,000	5,383,000	2,767,000	3,082,000
1인당 지원 한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가계자금 대여기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① 대여일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직원대상 ② 급여 등에서 판결공제대상자는 대여대상에서 제외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부동산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부동산원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2	2.71	2.38	1.65	2.3	2.3	5.09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부동산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97	COFIX + 0.75	2,767,000	미개정	186	5,563,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부동산원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부동산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부동산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939	8,733,775	11,016,642	19,750,417
2021	997	7,954,868	11,207,640	19,162,508
2022	1,046	8,006,632	12,049,026	20,055,658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비간부직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부동산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직	A	10	233	15	204	49	175	15	146	10	117	-	-
		비간부직	A	11	233	16	204	47	175	16	146	11	117	-	-
	내부 평가급	간부직	A	10	333	15	292	49	250	15	208	10	167	-	-
		비간부직	A	11	260	16	255	47	250	16	245	11	240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직	A	11	225	15	197	50	169	15	141	11	112	-	-
		비간부직	A	11	225	16	197	45	169	16	141	11	112	-	-
	내부 평가급	간부직	A	11	333	15	292	50	250	15	208	11	167	-	-
		비간부직	A	11	260	16	255	45	250	16	245	11	240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직	B	10	200	15	175	51	150	15	125	10	100	-	-
		비간부직	B	11	200	16	175	47	150	16	125	11	100	-	-
	내부 평가급	간부직	B	10	333	15	292	51	250	15	208	10	167	-	-
		비간부직	B	11	260	16	255	47	250	16	245	11	240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부동산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2명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58	12	3	0	1	0	3	5	2	1	0	2	0	0	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1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23.3.6.	성폭력	10	1	9	10.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8년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 1명에게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1개월) 중 보수 약 290만원을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359	739,765	3,186,835	3,926,600
2021	360	1,528,707	3,285,264	4,813,971
2022	358	1,429,660	3,326,911	4,756,571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이하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C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3급 이하			105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3급 이하			105										
2023	경영평가 성과급		C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3급 이하			105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9명임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704	79	10	0	19	0	19	31	2	9	7	0	1	1	59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771	713,596	844,396	1,557,992
2021	896	804,645	713,334	1,517,979
2022	1,007	1,411,572	-	1,411,572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최근 3년간 국토안전관리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C	12	53	19	47	38	40	19	33	12	27	0	0
	내부평가급		10	133	15	116	50	100	15	84	10	67	0	0
2022	경영평가 성과급	C	12	47	15	41	46	35	15	29	12	23	0	0
	내부평가급		10	133	15	116	50	100	15	84	10	67	0	0
2023	경영평가 성과급	C	11	67	17	58	44	50	17	42	11	33	0	0
	내부평가급		-	-	-	-	-	-	-	-	-	-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국토안전관리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발간일	2023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2090·1173)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59-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2040-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